

| SRI-정책-2022-01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ay C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Suwon

한연주·정보라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보라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11월 25일

발행 2022년 11월 25일

ISBN 979-11-6819-081-8(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한연주. 202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내용

- 2021년 말 기준, 수원시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신고(설치)시설 5개소, 위탁시설 6개소로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수원시 소재 11개소 주간보호시설은 내부지침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아인, 뇌병변장애인을 주간보호시설의 주된 대상으로 규정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에 인하여 2007년 당시 89명의 시설 정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422명까지 확대되었으나 10개소의 정원충족률은 80.5%임
 - 2022년 기준,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미지원받는 1개 시설은 제외함
- 11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총 332명(2022년 3월 말 기준)이었고, 그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아인)이 89.5%를 차지함
-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26.2세이며, 평균 이용기간은 1,545일임.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장애유형보다 이용기간이 길게 나타남
-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다 퇴소한 장애인은 총 201명이었는데 그 중 51.9%는 다시 주간보호시설로 회귀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대기자 533명 중 중복대기자를 제외한 대기자는 298명이었고 그 중 53.4%는 현재 다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확인되지 않는 미이용자는 39명으로 나타남
 - 현재 수원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대기자는 39명은 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로 예측됨
 - 7개 시설에 대기를 신청한 대기자도 존재함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15명 이하 시설 3개소(27.3%), 16명 이상 ~ 25명 이하 시설 2개소(18.2%), 30명에서 이상 40명 이하 시설 3개소(27.3%), 72명 시설 2개소(18.2%), 100명 정원 시설 1개소(9.1%)로 정원 규모가 다양함

- 수원시에서는 정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다보니 현원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중간관리자(2급) 및 송영서비스 인력 지원 등에서 격차가 발생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2.6%는 이용기한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시설이용을 희망하였고, 향후 주간보호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낮시간 보호'와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높게 나타남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낮시간 돌봄과 관련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특성별 중점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로 나타남
-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의 주돌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자녀를 주간보호시설에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72.2%로 나타났고,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할 때의 우선시되는 기준은 '서비스 수준(내용)'이었음

■ 정책제안

- ① 이용자의 정원 기준 마련
 - 시설 내 사무공간 및 화장실, 주방을 제외한 실면적 기준 정원 기준 마련
- ② 이용자의 이용기한 폐지 권고
 - 시설별 이용자의 이용기한 폐지 권고
 - 낮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의 연계체계 마련(직업재활시설 등)
 - 뇌병변장애인 및 중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마련
- ③ 이용자의 대기자 관리시스템 마련
 - 경기도에서 개발 중인 대기자 관리시스템 사용(1안) 및 자체 개발(2안)
- ④ 종사자의 처우개선
 - 시설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 처우개선 정책 마련
(안전수당 신설, 승진체계 마련, 시설별 중간관리자(2급) 기준 마련 등)
 -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종사자 배치 기준(3:1) 적용
- ⑤ 최중증 및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개소
 - 지역사회 내 최중증 및 중장년 장애인 관련 개념 협의
 -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내 간호직 인력 배치
 - 정원이 70인 이상인 시설의 최중증 장애인 필수 보호 인력 지정(인력배치는 1:1)
- ⑥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 확대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99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 설치되기 시작함
- 최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돌봄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소규모 시설과 특성화 및 개인별 서비스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2021년 발생한 대기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100명 정원의 대규모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대처함
- 수원시의 임시방편적인 대안은 이용자들의 1인당 공간면적을 축소시킴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 저하, 시설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수원시가 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이슈(운영실태 및 종사자 처우 등)들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보다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현황 및 욕구 분석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현황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7년 5개소에서 2021년 말 기준 1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5개소 시설은 신고(설치)시설이고, 6개소 시설은 민간위탁시설임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나 장애유형 중 발달 장애인 돌봄자들의 부담가중이 크다는 현실로 인하여 수원시 대부분의 주간보호시설은 내부규정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3월 말 기준,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10개시설의 정원충족률은 80.5%이었으며, 이용자 322명 중 발달장애인이 89.5%를 차지하고 있음. 이용자 평균연령은 26.22세이며, 평균 이용기간은 1,545일이었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타 장애유형보다 평균 이용기간이 길게 나타남
-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다가 퇴소한 장애인은 총 201명이었는데 그 중 중복자(39명)를 제외한 실 인원은 162명으로 나타남. 퇴소자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이 95.1%를 차지하고 평균연령은 27.7세, 평균 이용기간은 5년 9개월이었음
- 주간보호시설 퇴소자의 51.9%는 다시 주간보호시설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고, 서비스 미이용자 21명은 수원시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 지역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예측됨
- 2022년 2월 21일 기준,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는 533명이었는데 그 중 중복대기자와 타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실제 대기자는 298명이었음. 이들 중 159명(53.4%)은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31명은 직업재활시설, 25명은 주간 활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39명은 미이용자로 확인됨
 - 현재 수원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대기자는 39명은 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로 예측됨
- 전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은 20명 정원의 소규모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수원시는 11개소의 시설 중 15명 이하의 정원시설 3개소(27.3%), 16명 이상 ~ 25명 이하 시설 2개소(18.2%), 30명에서 이상 40명 이하 정원 시설 3개소(27.3%), 72명 정원 시설 2개소(18.2%), 100명 정원 시설 1개소(9.1%)로 정원 규모가 다양함
 - 전국에서 100명 정원 시설은 고양시 1개소, 수원시 1개소가 유일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정원으로 설정하다보니 정원이나 현원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격차가 커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욕구 분석

- 현재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11개소 시설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이용자 332명 중 28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3.2%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전 다른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넓고 분리된 시설이 존재하는 시설내부 환경에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장애인의 수준 및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이용자 중 92.6%는 이용제한 이후에도 이용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시설이용을 희망함
- 향후 주간보호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낮시간 보호'와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향후 주간보호시설은 '낮시간 돌봄과 관련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특성별 중점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수원시 장애아동 욕구 분석

-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6명 중 주간보호시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82.5%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향후에 주간보호시설을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72.2%로 나타남
- 향후에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할 때 우선시할 기준은 '서비스의 수준(내용)'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의 주된 이유는 자녀의 기능이 떨어질까봐 우려하거나 시설적으로 열악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 이용자의 정원 기준 마련
 - 시설 내 사무공간 및 화장실, 주방을 제외한 실면적 기준 정원 기준 마련
- 이용자의 대기자 관리시스템 마련
 - 시설별 이용자의 이용기한 폐지 권고
 - 낮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의 연계체계 마련(직업재활시설 등)
 - 뇌병변장애인 및 중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마련
- 이용자의 대기자 관리시스템 마련
 - 경기도에서 개발 중인 대기자 관리시스템 사용(1안) 및 자체 개발(2안)
- 종사자의 처우개선
 - 시설들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 처우개선 정책 마련
(안전수당 신설, 승진체계 마련, 시설별 중간관리자(2급) 기준 마련 등)
 -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종사자 배치 기준(3:1) 적용
- 최종증 및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개소
 - 지역사회 내 최종증 및 중장년 장애인 관련 개념 합의
 -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내 간호직 인력 배치
 - 정원이 70인 이상인 시설의 최종증 장애인 필수 보호 인력 지정(인력배치는 1:1)
-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 확대

주제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낮시간 돌봄, 발전방안, 이용자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관련 규정 분석	9
제1절 이론적 검토.....	11
1. 장애인 주간보호의 개념과 의미.....	11
2. 낮시간 이용 서비스 및 시설.....	12
제2절 운영 규정 및 선행연구 분석.....	16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규정.....	16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 관련 선행연구.....	22
제3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현황 분석	27
제1절 설치 및 이용자 현황.....	29
1. 설치 현황.....	29
2. 정원 및 이용자 현황.....	32
제2절 퇴소자 및 대기자 현황.....	49
1. 퇴소자 현황.....	49
2. 대기자 현황.....	52
제3절 종사자 현황.....	55
1. 종사자 배치 기준 및 현황.....	55
2. 퇴사 종사자 현황.....	60

제4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63
제1절 양적조사.....	65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실태 및 욕구조사.....	65
2. 학령기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향후 이용 욕구조사	75
제2절 질적조사.....	80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80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주돌봄자 인터뷰.....	86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91
제1절 요약.....	93
1.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현황.....	93
2.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실태 및 욕구.....	96
제2절 정책제언.....	97
1. 이용자의 정원 기준 마련.....	97
2. 이용자의 이용기한 폐지 권고.....	99
3. 이용자의 대기자 관리 시스템 마련.....	101
4. 종사자 처우개선.....	102
5. 최중증 및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개소.....	104
6.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 확대.....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09

표 차 례

〈표 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요	14
〈표 2-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지침	16
〈표 2-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공간적 배치기준	17
〈표 2-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간 배치 및 활용 관련 지침	18
〈표 2-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인력배치 기준	18
〈표 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종별 배치기준	19
〈표 2-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19
〈표 2-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인권교육 개정사항	21
〈표 2-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사업수행 기능	22
〈표 3-1〉 경기도 상위 10개 지자체의 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2021.12.31.)	30
〈표 3-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2007년~2021년)	30
〈표 3-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현황	31
〈표 3-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자 기준	32
〈표 3-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변동 사항	33
〈표 3-6〉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2022.03.31.)	34
〈표 3-7〉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특성(2022.03.31. 기준)	35
〈표 3-8〉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등·하원 소요시간 및 송영서비스 현황	36
〈표 3-9〉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현황	48
〈표 3-10〉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기한 현황	48
〈표 3-1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자 현황(2017.01.01.~2022.06.16.)	49
〈표 3-1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자의 특성	50
〈표 3-1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복이용 퇴소자의 특성	51
〈표 3-1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모집방법 및 향후 변경방법	52
〈표 3-1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현황(2022.02.21.)	52
〈표 3-16〉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실인원	53
〈표 3-17〉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의 특성	53
〈표 3-18〉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력배치 기준표	55
〈표 3-19〉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정원(2022.03.31.)	56

〈표 3-20〉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보조금 지원 규모(2022년).....	57
〈표 3-2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 현황(2022.03.31.).....	58
〈표 3-2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현황(2020.03.31.).....	59
〈표 3-2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60
〈표 3-2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퇴사자 현황.....	61
〈표 3-2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사자의 근무기간 현황.....	61
〈표 4-1〉 양적조사의 개요(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실태 및 욕구조사).....	65
〈표 4-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66
〈표 4-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67
〈표 4-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하는 기준(현재, 미래).....	68
〈표 4-5〉 주간보호시설 옮긴 경험 여부.....	69
〈표 4-6〉 주간보호시설을 옮긴 이유.....	69
〈표 4-7〉 주간보호시설 내부 환경 만족도 수준	70
〈표 4-8〉 주간보호시설 내부 환경·프로그램 만족도 이유.....	70
〈표 4-9〉 이용기한 제한의 필요성.....	71
〈표 4-10〉 이용기한 제한의 필요성 이유.....	71
〈표 4-1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 이후 계획.....	72
〈표 4-1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의향(이용기한 제한 이후).....	72
〈표 4-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72
〈표 4-1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	73
〈표 4-1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정책제안 및 건의.....	74
〈표 4-16〉 양적조사의 개요(학령기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향후 이용 욕구조사).....	75
〈표 4-17〉 학령기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76
〈표 4-18〉 주간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	77
〈표 4-19〉 주간보호시설 선택 시 기준.....	78
〈표 4-20〉 낮시간 이용 희망 시설.....	79
〈표 4-2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79
〈표 4-22〉 학령기 장애인의 정책제안 및 건의.....	80
〈표 4-2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관방문 현황.....	80
〈표 4-2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터뷰 현황.....	81
〈표 4-25〉 시설장 간담회 현황.....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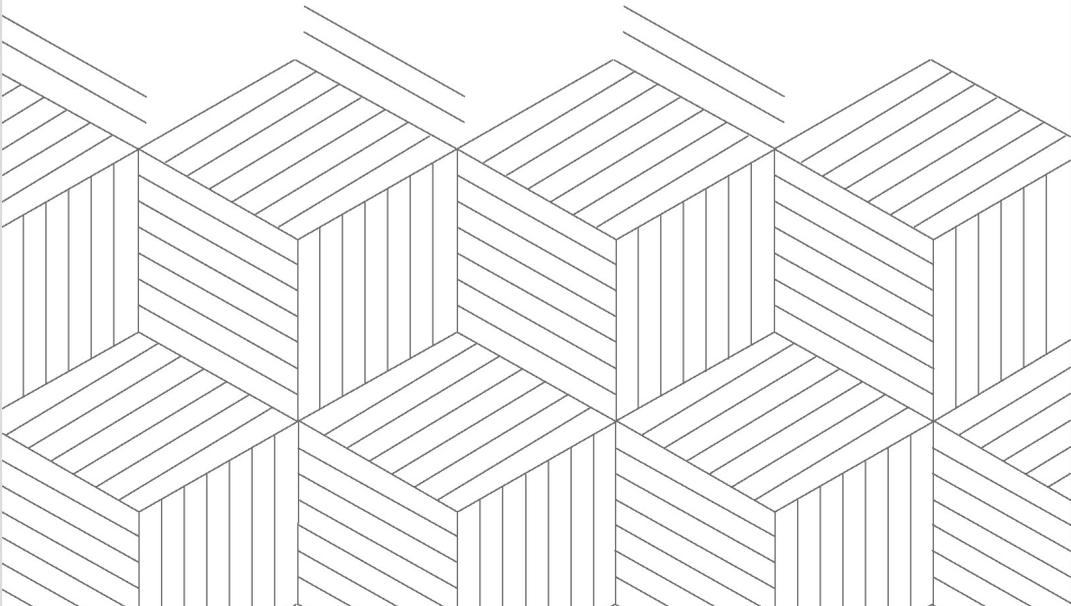
〈표 4-2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주돌봄자 인터뷰 현황..... 86
〈표 5-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실면적 공간..... 99
〈표 5-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계약기간 유지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결과..... 10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7
〈그림 2-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시설	15
〈그림 3-1〉 경기도 시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2021년 말 기준)	29
〈그림 3-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2007년~2021년)	30
〈그림 3-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지역	31
〈그림 3-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추이(2007년~2021년)	33
〈그림 3-5〉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37
〈그림 3-6〉 꿈자리보금자리 등·하원 노선도	38
〈그림 3-7〉 노을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하원 노선도	39
〈그림 3-8〉 북수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40
〈그림 3-9〉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등·하원 노선도	41
〈그림 3-10〉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42
〈그림 3-11〉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43
〈그림 3-12〉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등·하원 노선도	44
〈그림 3-13〉 수원시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45
〈그림 3-14〉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46
〈그림 3-1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커널밀도	47
〈그림 3-16〉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수원시 소재)	54
〈그림 3-17〉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현황(서비스 미이용자)	54
〈그림 4-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하는 기준(현재, 미래)	68
〈그림 4-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	73
〈그림 4-3〉 주간보호시설 선택 시 기준(장애아동 기준)	7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필요성

- 장애인은 그동안 자립의 대상이 아닌 재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은 주로 지역 사회와 분리된 시설보호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였음(김미옥, 정민아, 2018)
-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인권적 문제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장애인도 시민의 일원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기 시작함(김명연, 2016; 김민희, 2019)
 -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1950년대부터 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탈시설 정책으로 설정 하였으나(최선경, 2020) 우리나라는 2008년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권리주장이 본격화됨(이연진, 2021)
-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현재 장애인에게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임(이병화 외, 2020)
- 수원시의 등록장애인은 43,501명(2021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경기도에서 두번째 수준임
 - 경기도에는 안산시가 13개소로 가장 많음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7년 5개소에서 2014년 9개소로 확대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확산세가 주춤하다가 2021년 2개소가 추가적으로 확대됨(수원시 장애인 복지과 내부자료)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증가율은 크지 않은데 반해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은 내부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최대 이용기간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2021년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발생함(인천일보, 2021.09.08.)

- 수원시는 2021년 발생한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시설의 정원을 일부 확대하였고, 2021년 민간위탁시설로 개소 예정이었던 시설정원을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여 개소함(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기존 시설들의 경우 면적은 동일한데 이용 장애인만 증가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1인당 공간면적이 축소되었고, 종사자들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음
- 100명 정원 대규모 시설의 정원충족률은 62.0%(2022년 3월 말 기준) 수준이고, 현장에서는 시설규모(소규모 시설, 중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 간에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및 인력배치 기준에 관한 적정성에 관한 이슈도 제기하고 있음
 - 전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20~30명에 집중된 반면 수원시는 시설들 간의 정원규모가 크고, 지원기준이 시설마다 차별적이라는 이슈가 있음
 - 수원시 1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정원이 15명 이하인 시설 3개소, 16명~25명 시설 2개소, 30명 이상 ~40명 이하 시설 3개소, 72명 시설 2개소, 100명 시설이 1개소임
 - 전국에서 100명 정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고양시와 수원시가 각 1개소로 유일함
 - 중간관리자 및 운전원 배치 등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같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기준 자체가 형평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면서 지역별 편차에 따른 서비스 격차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서해정, 장기성, 송기호, 2019; 이병화 외, 2020), 최근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유정원, 이미영, 2021)
 - 선행연구에서는 지역 간 서비스 편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음
- 수원시가 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이슈(운영실태 및 종사자 처우 등)들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선행연구들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면서 소규모의 지역밀착형 특성화 시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원시는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 시설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위탁시설과 설치(신고)시설 간의 서비스 수준 격차에 대한 이슈도 존재함

2. 연구목적

-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 및 보호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낮시간 돌봄 및 보호기능을 보다 질 높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 첫째,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둘째,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슈 및 한계를 파악하여 낮시간 돌봄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상적 범위는 수원시 소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임. 이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41조에서 정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대기자, 퇴소자, 종사자 등을 포함함
-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가 수행되는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소의 시설임. 즉, 2022년 3월 말 기준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11개소 시설 중 1개소의 시설은 수원시로부터 2023년부터 지원을 받지만 현재 다른 시설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킴. 단, 일부는 해당되지 않아 미포함된 경우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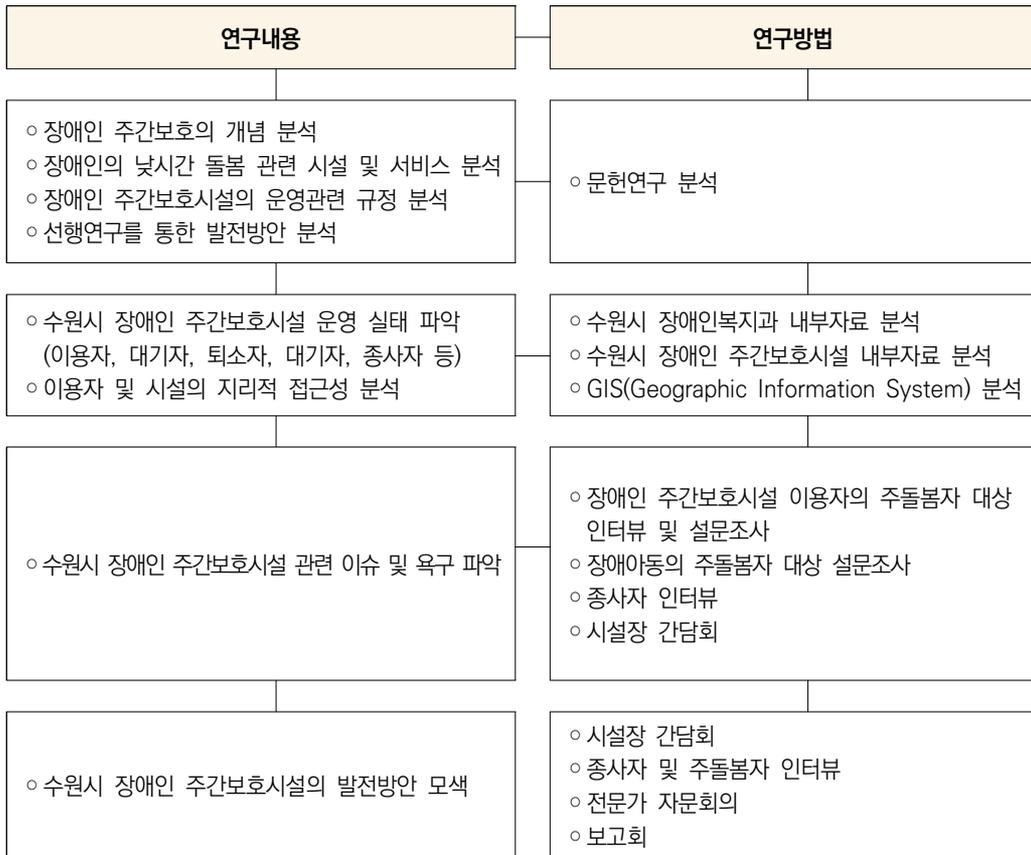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와 관련된 개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수원시 행정자료와 1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및 퇴소자, 대기자, 시설의 지역적 분포 등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분석함

- 모든 시설들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함
- 시설과 이용자들 간의 거리적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IS 분석을 실시함
- 수원시 소재 11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별 방문 및 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함
- 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징과 설치주체(위탁 및 신고(설치)) 등에 따라 시설별 이슈와 욕구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소재 모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함
- 직책에 따른 이슈와 욕구는 상이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와 종사자는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시설장은 정기간담회를 실시함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욕구를 파악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이용만족도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별로 추천을 받아 포커스그룹인터뷰(FGI)도 진행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와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 주돌봄자의 욕구는 상이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함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원 정책을 마련함
- 시설 이용장애인의 주돌봄자 및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함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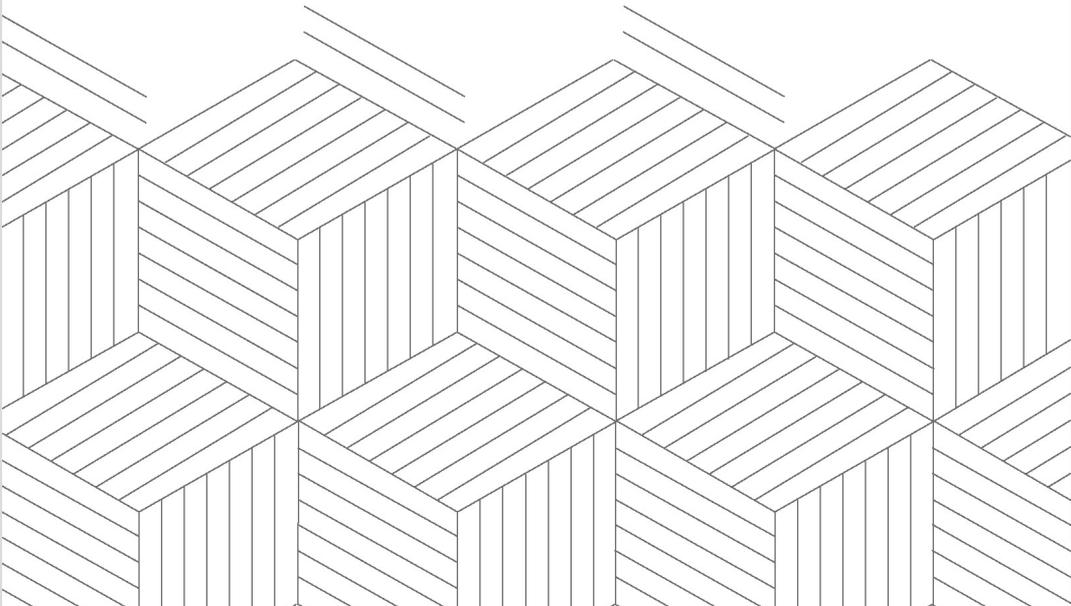
- 본 연구수행을 위해 수행한 연구체계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관련 규정 분석

제1절 이론적 검토
제2절 운영 규정 및 선행연구 분석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관련 규정 분석

제1절 이론적 검토

1. 장애인 주간보호의 개념과 의미

- 탈시설 정책 및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 내 낮시간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이는 주간보호 서비스(Day Care)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주간보호의 개념이 어떠한 의미이고 기능인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주간보호 서비스(Day Care)에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 ‘주간(晝間)’이라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의미함(서해정, 장기성, 송기호, 2019)
- 케어(Care)의 개념은 그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일본의 케어복지 사전에 따르면 케어를 개호(介護)라고 표현하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한 일상생활의 원조”로 정의함(현외성, 윤은경, 2002). 이는 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지만 노인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요양보호와 같은 보호서비스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018년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었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서 케어(Care)의 개념은 “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communiti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며, 케어는 돌봄뿐 아니라 주거, 복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으로 정의함(보건복지부, 2018). 즉,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케어의 의미는 앞선 일본의 개념보다는 확장된 사회서비스의 개념으로 간주함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케어란 커뮤니티 케어에서 정의한 개념과 유사하지만 주거와 복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이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 동안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day care의 개념을 의미함. 즉,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주간보호(day care)서비스를 정의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함(보건복지부, 2022a)

- 장애인 주간보호에서의 Care는 단순한 시설에서의 ‘보호’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동안 평생교육, 자립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용어임(서해정, 장기성, 송기호, 2019)
 - 주간보호라는 개념에 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이 포함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이 크기 때문임
 -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22.5%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평일 낮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거나 부모·가족과 보내고 있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b)
 - 평생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의 제도권 서비스가 축소되고, 영유아기부터 비롯된 돌봄으로 인해 타 장애유형보다 부모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주된 이용 대상임(이복실, 2015)

2. 낮시간 이용 서비스 및 시설¹⁾

-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통합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낮 시간 서비스를 강조함(서원선, 최복천, 이상준, 2021)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의 중요성은 장애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어느 한 시점에만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선상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가 있음. 이는 각각의 발달단계는 통합적으로 관계되어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권선진, 김형수, 전학선, 1996)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연령기준은 없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은 40대를 전·후로 서비스 중단현상을 보이고, 동일한 연령집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서비스의 정책과 내용에 따라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음

1)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을 의미함

- 수원시에서 2016년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의 공적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기 76.6%, 학령기 80.1%, 성인기 26.0%, 노년기 4.2%로 나타나 학령기에 서비스 이용률이 정점이다가 감소함(한연주, 이영안, 방대혁, 2016)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낮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1) 영·유아기

- 영·유아기는 주로 보육과 교육이 합쳐진 돌봄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보호와 교육을 의미하는 보육은 특수어린이집의 한 유형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22c)
 - 영유아기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순회학급, 일반학급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2) 학령기

- 학령기는 영유아기와 동일하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순회학급, 일반학급을 통해 교육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같은 특수교육기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발달장애학생에게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성인기 이후

- 학령기까지의 교육서비스는 학교교육과정에 집중된 반면 성인기부터 중·장년기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외 교육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에 집중됨
 -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성인들에게는 별도의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

-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대표적임
 - 낮시간 돌봄과 관련해서는 만18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으며(김대명, 2019), 이는 특정대상을 제외하면 앞서 정의한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의 개념과 유사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은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중복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임

〈표 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요

구분	내용
개념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
대상	가구 소득·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만18세부터 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
내용	단축형(월 44시간, 일2시간), 기본형(월88시간, 일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
급여유형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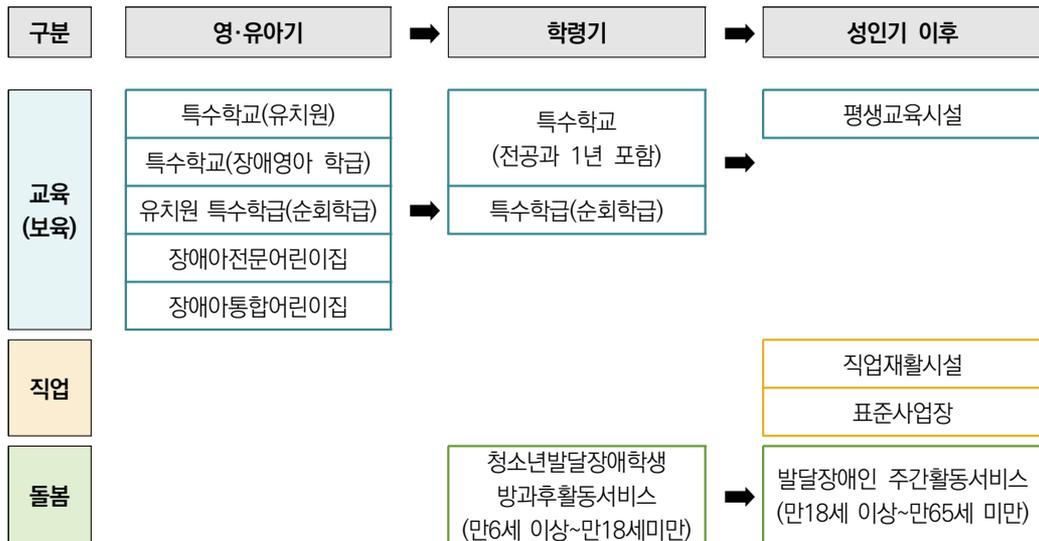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2d).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의미함(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

〈그림 2-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시설



자료: 각종 법률 및 사업안내

제2절 운영 규정 및 선행연구 분석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규정²⁾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993년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1996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설치 및 운영이 법제화됨(서해정 외, 2019)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 법제화됨에 따라 시설의 면적,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은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관련 규정 등을 분석하고자 함

1) 설치 및 연면적 공간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 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2022년에 신설된 내용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개정됨. 단, 부득이한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복합 설치·운영 가능함

〈표 2-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지침

2021년	2022년 개정사항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최대한 지역 내 시설 분포와 교통, 보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은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나 유사한 기능인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다르게 정원 1인당 규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2)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낮시간 동안 일정공간에서 노인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는 1명 당 6.6㎡ 이상 확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은 최소 공간면적만 규정하다 보니 시설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원을 확대할 수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1인당 공간면적이 축소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표 2-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공간적 배치기준

구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8조2항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4항 재가노인복지시설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 이상	90㎡이상
1인당 공간	-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 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공간 추가 확보

자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한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소독과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거실, 조리실, 의무실(또는 의료재활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피시설, 그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시설 중 거실과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안내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2022년 개정된 사항에서는 이용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해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별도로 포함시킴

〈표 2-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간 배치 및 활용 관련 지침

2021년	2022년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해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 소독과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주: 밑줄은 2021년과 변화된 내용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2) 종사자 배치 및 인건비 기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종은 크게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으로 구분됨
 -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 승인 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이 가능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사, 보조원으로 다양한데 반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무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재활교사가 유일한 필드 인력임

〈표 2-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인력배치 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1인 ○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3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 사무원 1인(지자체 협의) ○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1인 ○ 사회복지사 1인 ○ 간호사 등 1인 이상 ○ 요양보호사(이용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자료 1: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 Ⅲ 권
 2: 노인복지법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는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종사자 배치기준이 4:1에서 3:1로 변경됨
 - 종사자 중 사회재활교사의 배치기준이 이용장애인 3인당 1명 배치로 변경됨
 - 사회재활교사 중 팀장과 팀원이 각각 있는 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표 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종별 배치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2021년	2022년	
시설장	1명	1명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재활교사	4명	3명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1명	1명	시설당 1인(지자체 협의)
기능직	1명	1명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은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는 월 20시간, 연 240시간임

3) 관리운영비

- 시·군·구의 관리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 함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 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출 가능함

〈표 2-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지원구분	지원액	비고
시설당 기본지원	16,000/년	-
인원 가중지원	1,600/년	15인 초과 인원 1인당 지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시설의 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는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함
-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활사업비 및 재활보조 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장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기능보강의 경우 시설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뇌병변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3) 이용자 선정 및 인권교육

-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을 홍보해야 하며,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해야 함
- 이용자를 선정할 때는 이용 장애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중증 장애인(중복 장애 등)을 우선 배려해야 함
 - 1개 시설 당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함
- 이용 신청 후 이용 절차에 따라 선정 결과를 이용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이용 확정 시 시설장과 이용 장애인, 보호자 간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이용료 등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보호자) 등의 권리·의무, 시설의 책임 및 역할, 계약 해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해야 함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은 시설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인권교육의 시간이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인권교육 강사자격도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

회 주간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로 변경됨

〈표 2-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인권교육 개정사항

2021년	2022년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사자 중 아래의 “인권교육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강사자격(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등)이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사자 중 아래의 “인권교육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

주: 밑줄은 2021년과 변화된 내용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4) 수행사업

- 시설장은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크게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 및 훈련지원, 지역 사회 적응활동지원, 특별활동 지원 등을 수행함(〈표 2-9〉 참조)

〈표 2-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사업수행 기능

수행사업	내용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및 간식지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 생활능력을 배양
여가활동 지원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취미 활동 등 체험위주의 여가활동을 제공
교육·훈련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양 및 언어·인지 등의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 이해를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이용 등 활동 서비스 지원
특별활동 지원	여행, 캠프 및 기념일 활동 등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하고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도
기타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 관련 선행연구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발전 방향을 먼저 분석하고자 함

1) 종사자의 처우개선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과 이용인의 삶의 질 향상은 전문성을 기반한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사회재활교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임(김금냥, 2020; 여금숙, 2002)
 - 사회재활교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에 있어 핵심 구성요소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그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여 타 사회복지직군에 비해 사회재활교사의 이직율이 높음(김남선, 2021; 서해정 외, 2019; 이병화 외, 2020)

2) 종사자의 적절한 인력배치

- 사회재활교사의 업무소진 예방, 장기근속의 환경조성, 이용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회재활교사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2022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서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이용 장애인 4인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를 3인당 1명 배치로 변경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할 때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지체, 청각 등)과 장애정도(장애등급, 중복장애, 도전적 행동 동반 등)가 반영되지 않아 사회재활교사의 업무소진이 빠르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김남선, 2021; 김연옥, 윤덕찬, 2009; 서해정 외, 2019; 이진승, 2014)
 -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는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인력을 볼 때 시설장을 제외한 3명의 직원이 프로그램 운영과 운전, 심지어 식사 준비까지 담당하는 상황에서 치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백은령, 2009)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주목적인 주간보호에 우선적으로 집중 할 수 있도록 기능직, 사무원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회재활교사가 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업무(운전업무 및 조리업무 등)로 인해 업무시간의 소모가 크다보니 시설의 주목적인 주간보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사회재활교사가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직과 사무직과 관련된 추가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김남선, 2021; 서해정 외, 2019; 이병화 외, 2020)
 -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사무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당 1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시설과 지자체의 상하관계에서 협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3) 사회재활교사의 승진체계 및 전문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사회재활교사의 동기부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의 승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적 기술과 함께 정서적 안정, 심리적 행복감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행복감의 한 변인이 승진이며, 승진이 높을수록 생활 재활교사의 행복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연이섬, 2014)

- 서비스의 질은 전적으로 인력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의 인력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접근은 결국 종사자들의 소진을 초래함(이향미, 2017)
- 최근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틀로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서울시 평가체계에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유정원, 이미영, 2021)

4) 통일된 서비스안 마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형식, 프로그램, 이용기한 제한, 이용조건 등 시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권경만(2009)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0개소를 조사한 결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이용기한 제한, 서비스 대상자선정 등 시설마다 상이한 제한과 규정으로 이용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통일된 서비스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 지자체별 또는 동일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이용기준이 상이하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용자의 연령 제한, 이용 기한, 장애정도, 이용자 선정기준, 대기자 관리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됨(이병화 외, 2020)

5) 대기자 시스템 마련

- 정확한 대기자 현황 파악과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파악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및 대기자 관리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병화 외, 2020)
 -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대기자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자 관리를 통해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

달할 필요가 있음(이병화 외, 2020)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의 경우 다수의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행정력이 손실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이병화 외, 2020)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시스템은 광주지역에서도 필요성이 언급됨.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 통계의 공유 등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기자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함을 언급함(권경만, 2009)

6) 중고령 발달장애인 및 장애특성에 따른 특화된 주간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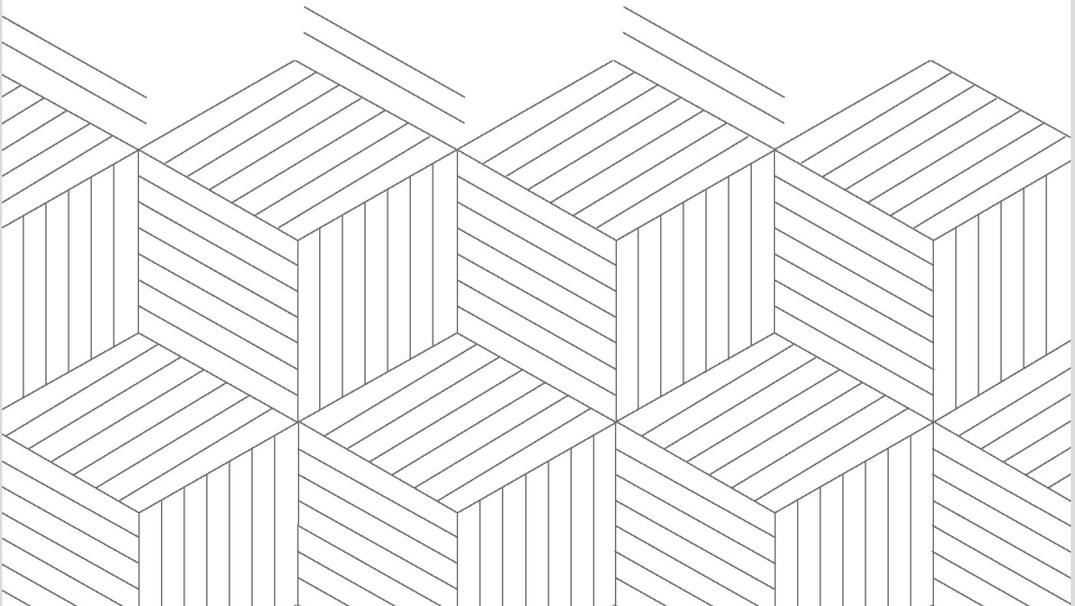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케어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상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45~64세 장애인은 케어에 있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권경만, 2009)
 -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1930년대 19세, 1970년대 50세, 1993년에 66.1세로 평균수명이 매우 증가함. 이와 같이 평균수명이 높아진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는 평생계획 수립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음 (Janicki, Dalton, Henderson, and Davidson, 1999)
 - 의학기술의 발달과 건강관리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부모의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의 가중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노령화로 인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욕구 증대 등으로 중·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시설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함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경우 육체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가 송영을 지원할 수 없음(이진승, 2014)
 - 중·고령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치료적 서비스와 건강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백은령, 2009)

-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및 특성(장애유형 등) 구분없이 한 공간을 이용하면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도전적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그룹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이병화 외, 2020)

제3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현황 분석

제1절 설치 및 이용자 현황
제2절 퇴소자 및 대기자 현황
제3절 종사자 현황



제3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현황 분석

제1절 설치 및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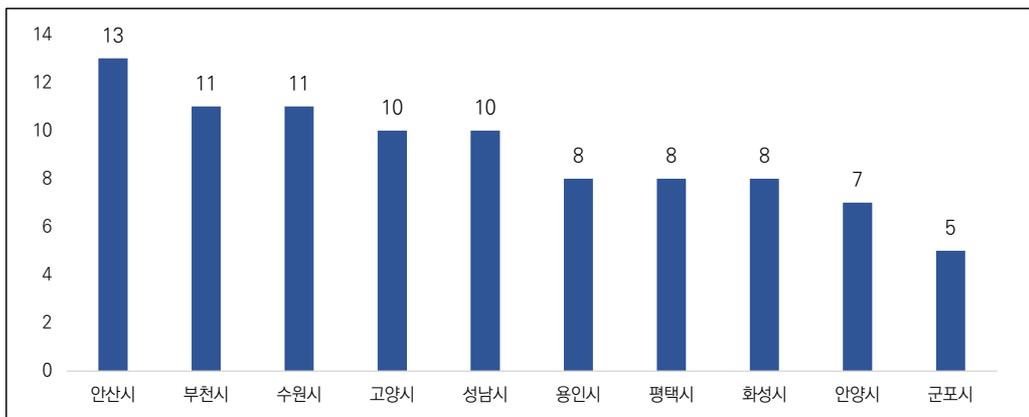
1. 설치 현황

1) 경기도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원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1개소임(보건복지부, 2022)
 - 2021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148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안산시가 13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원시 11개소, 부천시 11개소, 고양시 10개소, 성남시 10개로 나타남. 그 외 지자체는 8개소 이하로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지만 주간보호시설은 안산시가 13개소로 가장 많음

〈그림 3-1〉 경기도 시군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2021년 말 기준)

(단위: 개소)



주: 2021년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10개 지자체만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e).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

〈표 3-1〉 경기도 상위 10개 지자체의 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2021.12.31.)

(단위 : 개소)

경기도	상위 10개 지자체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148	13	11	11	10	10	8	8	8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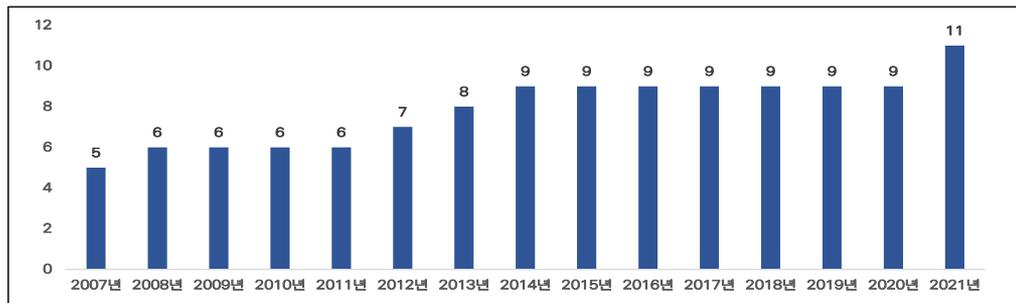
주: 2021년 12월 말 기준이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상위 10개 지자체만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21.12월 말 기준)

2)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7년 말 당시에는 수원시에 5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8년 6개소, 2012년 7개소, 2013년 8개소, 2014년 8개소, 2021년 11개소로 확대됨(〈표 3-2〉 참조)
 -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999년에 설치된 A시설과 B시설이고, 2005년 C시설, 2006년 D시설 및 E시설, 2008년 F시설, 2013년 G시설, 2014년 H시설, 2015년 I시설, 2021년 J시설과 K시설이 개소함(〈표 3-3〉 참조)
 - 2006년 당시 D시설은 아동시설이었으나 2014년까지만 운영되었고, 2012년 성인시설이 추가 개소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음

〈그림 3-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2007년~2021년)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각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

〈표 3-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2007년~2021년)

(단위: 개소)

시기	2007년	2008년	2009년~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2020년	2021년
시설 수	5	6	6	7	8	9	9	11

자료: 보건복지부. 각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

- 현재 수원시 소재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신고시설은 5개소(45.5%)이고 6개소(54.5%) 시설은 민간위탁시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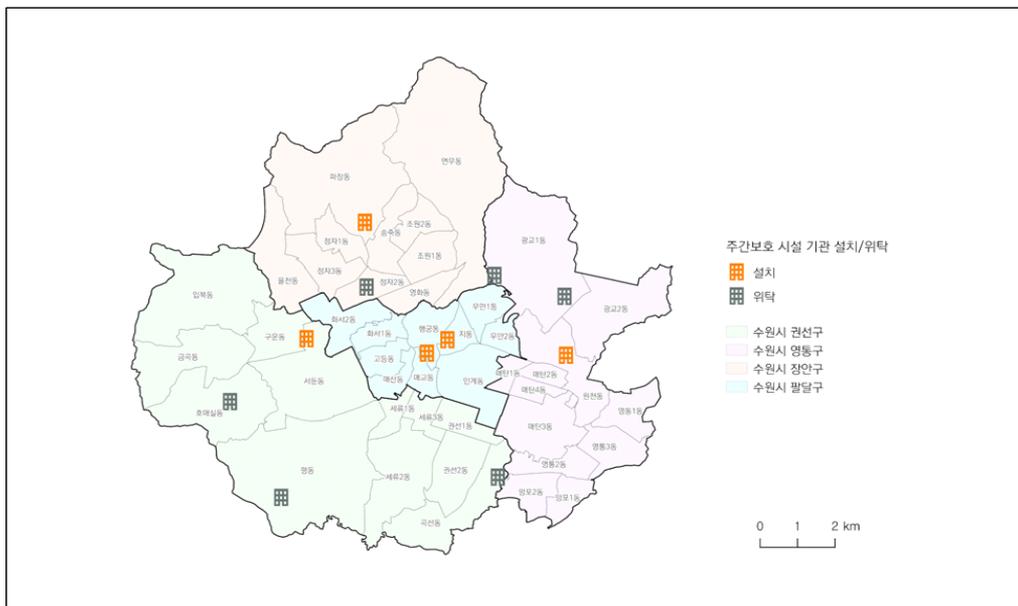
〈표 3-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	위탁/신고시설
1	A시설	권선구	1999.08.30.	위탁
2	B시설	장안구	1999.11.22.	위탁
3	C시설	장안구	2005.07.07.	신고
4	D시설	영통구	2006.07.20.	위탁
5	E시설	권선구	2006.10.30.	신고
6	F시설	팔달구	2008.09.30.	신고
7	G시설	영통구	2013.09.01.	위탁
8	H시설	권선구	2014.11.10.	위탁
9	I시설	팔달구	2015.12.09.	신고
10	J시설	권선구	2021.08.01.	위탁
11	K시설	영통구	2021.12.27.	신고

자료: 보건복지부(2022e),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

- 11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지역은 다음의 〈그림 3-3〉과 같음

〈그림 3-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지역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 정원 및 이용자 현황

1) 정원 현황

- 본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11개의 주간보호시설은 주로 지적 및 자폐성을 의미하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주된 이용자로 제한하고 있음
- A시설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도 포함하고 있으나 10개소의 시설은 만 18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F시설 경우 47세로 이용자의 상한기준 연령도 설정함

〈표 3-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자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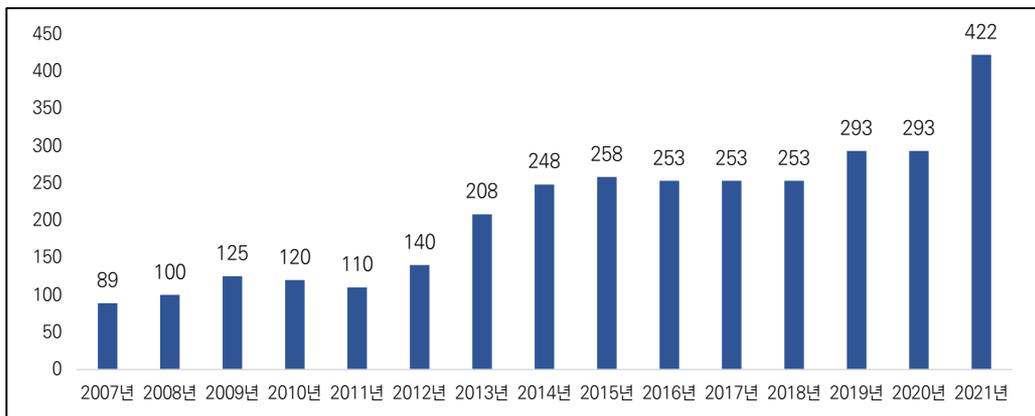
연번	시설명	정원	이용자 기준
1	A시설	32	만6세~22세 중증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2	B시설	72	만18세 이상 뇌병변, 발달장애인
3	C시설	15	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장래인
4	D시설	32	18세 이상 중증지적·자폐성장래인
5	E시설	13	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장래인
6	F시설	24	18세 이상 47세 미만 중증 지적·자폐성장래인
7	G시설	72	만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8	H시설	36	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장래인
9	I시설	10	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10	J시설	100	만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11	K시설	16	만18세 이상 중증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2007년 당시 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89명이었으나 지속적인 시설 개소와 수원시의 요청에 의해 2021년 말 기준 정원은 422명임(〈표 3-5〉 참조)
 - 민간위탁시설 중 A시설은 2명, D시설은 17명, H시설은 6명이 증가하였고 신고 시설 중 F시설 역시 4명의 정원이 증가함
 - B시설의 경우 시설 증축에 따라 정원이 42명 증가됨
 - 위탁시설의 정원은 344명(81.5%), 5개소 신고시설의 정원은 78명(18.5%)임
- 시설들에게 희망정원을 질문한 결과, 총 349명으로 개소당시의 정원규모 수준임(〈표 3-5〉 참조)

〈그림 3-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추이(2007년~2021년)

(단위: 명)



주: 매년 연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표 3-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변동 사항

(단위: 명)

시설명	정원					
	최초 (a)	현재 (b)	변경인원 (b-a)	변경 시기	변경 이유	희망 정원
계	349	422	73			349
A시설	30	32	2	2021.07.	시의 요청(2명 확대)	21
B시설	30	72	42	2020.01.	시설신축에 따른 정원(40명) 확대	54
				2021.07.	시의 요청(2명 확대)	
C시설	15	15	0	-	-	15
D시설	15	32	17	2012.01.	성인주간시설로 전환(정원 15명 고정)	30
				2016.01.	내부(15명 확대)	
				2021.06.	시의 요청(2명 확대)	
E시설	13	13	0	-	-	10
F시설	20	24	4	2021.06.	시의 요청(정원 2명 확대)	20
G시설	70	72	2	2021.07.	시의 요청	60
H시설	30	36	6	2016.09.	시의 요청(5명 확대)	33
				2021.07.	시의 요청(1명 확대)	
I시설	10	10	0	-	-	10
J시설	100	100	0	-	-	80
K시설	16	16	0	-	-	16

주: 2022년 6월 말 기준이며, K시설은 2023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및 시설별 취합된 자료

2) 이용자 현황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총 422명인데 이용장애인은 332명(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나타나 정원충족률은 78.7%임. 이를 위탁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하면 위탁시설은 79.1%, 신고시설은 76.9%로 나타나 위탁시설의 정원충족률이 더 높음
- K시설은 2022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며, 100명 정원 시설의 정원충족률은 62.0%로 나타나 정원충족률이 가장 낮음

〈표 3-6〉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2022.03.31.)

(단위: 명, %)

연번	시설명	위탁/신고	이용자		정원 충족률
			정원	현원	
계			422	332	78.7
1	A시설	위탁	32	27	84.4
2	B시설	위탁	72	68	94.4
3	C시설	신고	15	15	100.0
4	D시설	위탁	32	27	84.4
5	E시설	신고	13	10	76.9
6	F시설	신고	24	20	83.3
7	G시설	위탁	72	56	77.8
8	H시설	위탁	36	32	88.9
9	I시설	신고	10	10	100.0
10	J시설	위탁	100	62	62.0
11	K시설	신고	16	5	31.3

주: 2022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및 시설별 취합자료

-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11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3-7〉 참조),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을 의미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89.5%를 차지함
- 11개 시설 중 1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만18세 이상으로 이용자의 연령기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26.2세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 평균연령은 청각장애인(29세), 지적장애인(27.1세), 자폐성(25.1세), 뇌병변장애인(23.3세)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이용기간은 1,545일이었으며, 뇌병변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평균 이용기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7〉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특성(2022.03.31. 기준)

(단위: 명, 세, 일)

구분		장애유형				
		계	지적	자폐성	뇌병변	청각
장애 정도	계	332	208	89	34	1
	심한장애	332	208	89	34	1
	심하지 않은 장애	0	0	0	0	0
연령	최소	7	9	7	13	-
	최대	48	48	42	40	-
	평균	26.2	27.1	25.1	23.3	29
이용 기간	최소	3	3	3	45	-
	최대	8,088	8,088	8,130	7,878	-
	평균	1,545	1,618	1,122	2,253	45

주: 이용시기는 최초이용시기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 수원시 소재 11개소의 주간보호시설들은 이용자들의 송영서비스를 위하여 적게는 1대 많게는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11개 시설 중 5개 시설만 송영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었고 8개의 시설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영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음(〈표 3-8〉 참조)
 - 송영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여도 사회재활교사가 동행해서 송영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송영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없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과 횟수를 송영서비스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오전 송영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출근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전인 9시 이전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9시 이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수원 지역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시설별 송영서비스를 위한 노선도는 〈그림 3-5〉부터 〈그림 3-14〉까지 참조
 - 시설별 송영서비스는 시설명을 공개함

〈표 3-8〉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등·하원 소요시간 및 송영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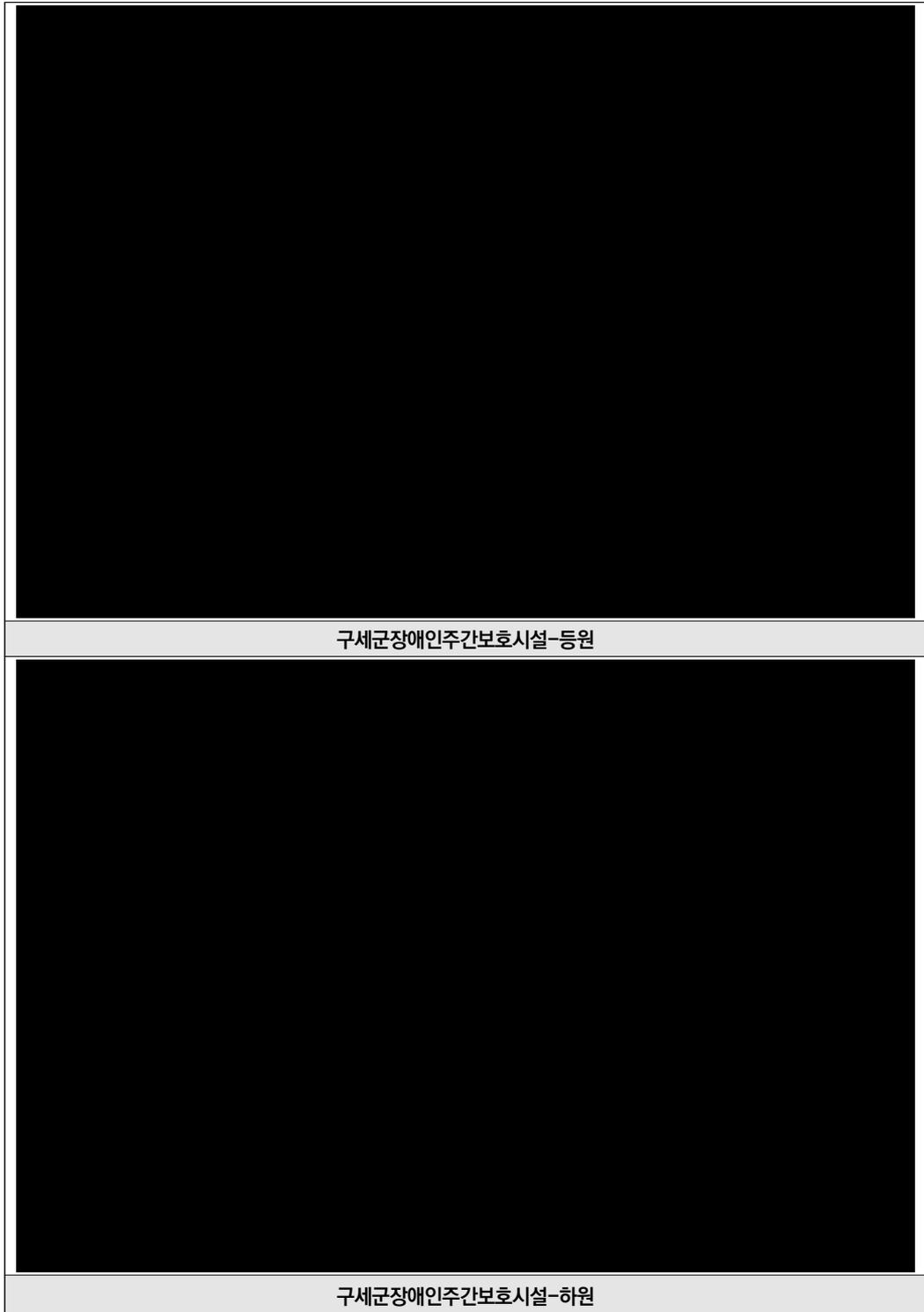
연번	시설명	송영 차량 현황(대)	운전원 인력 지원 여부 (보조금지원 인력)	차량운행 별도 인력 채용 유무	등원			하원				
					시설 제출 자료		실제 이동시간 및 거리		시설 제출 자료		실제 이동시간 및 거리	
					출발~도착시간	소요시간(분)	거리(km)	출발~도착시간	소요시간(분)	거리(km)	출발~도착시간	소요시간(분)
1	D시설	2	0	미채용	9:00~10:00	36	22	16:00~17:00	92			
						45	14		45			
2	H시설	2	1	채용	9:05~10:40	108	29	15:20~17:05	81			
3	C시설	3	0	미채용	7:40~09:30	70	23	16:20~17:45	73			
						34	11		34			
4	I시설	1	0	미채용	8:20~09:50	68	24	16:00~17:20	93			
5	E시설	1	0	채용	7:50~10:20	63	20	15:50~17:40	63			
						38	13		38			
6	J시설	3	2	채용	8:40~10:30	86	23.4	15:40~17:40	80			
						95	32		102			
7	G시설	2	2	채용	8:20~10:10	77	22.8	16:00~18:00	74			
						100	34		102			
8	B시설	2	2	채용	9:00~10:50	87	30.6	16:00~17:45	89			
						72	23		83			
9	A시설	2	1	채용	8:30~10:00	95	32	16:10~17:40	62			
10	F시설	2	0	채용	8:00~10:30	107	36	15:30~17:20	91			

주 1: 소요시간과 거리의 기준은 등원은 오전 8시 30분, 하원은 오후 4시 기준으로 검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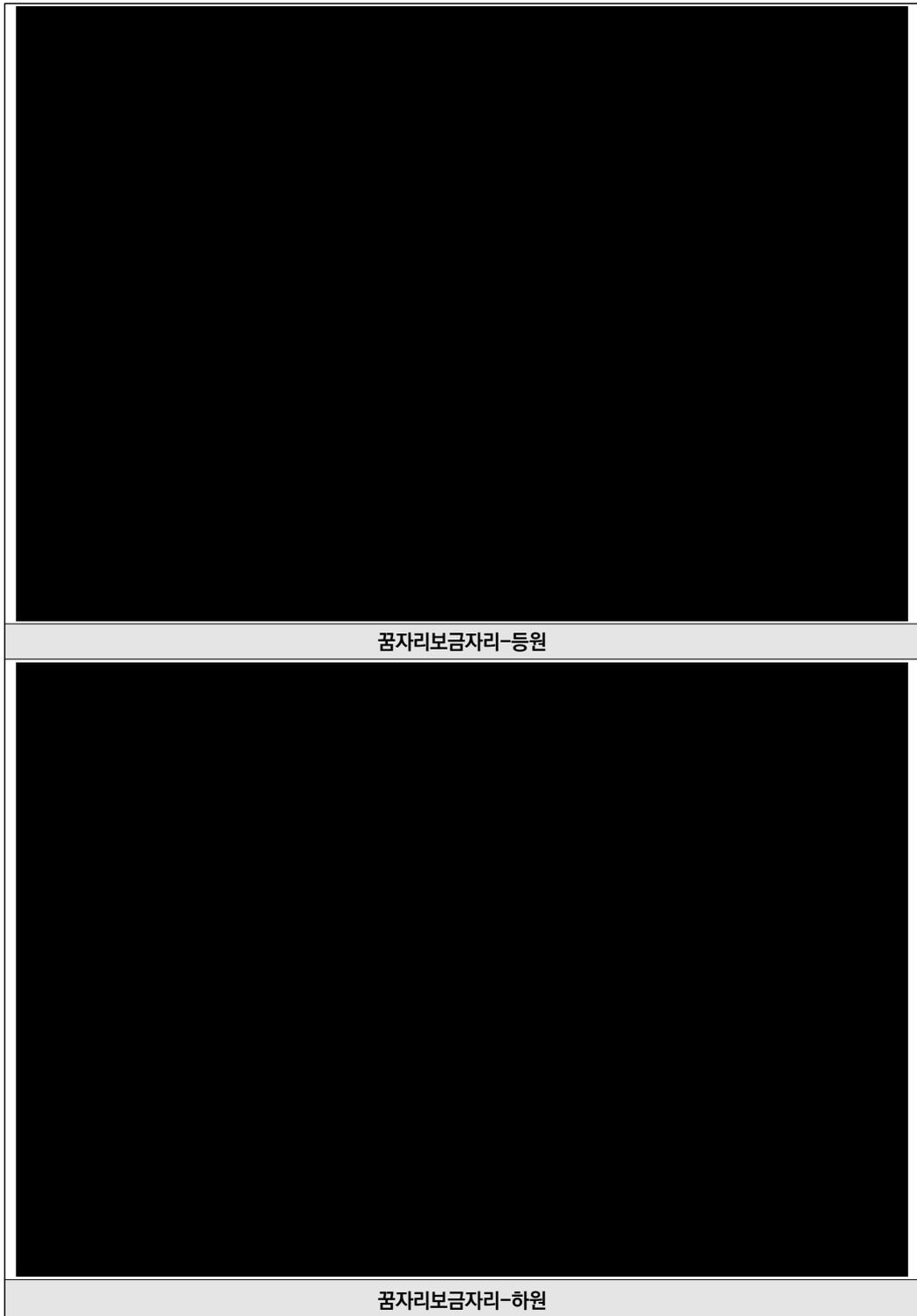
2: 소요시간 및 거리는 동일한 시간대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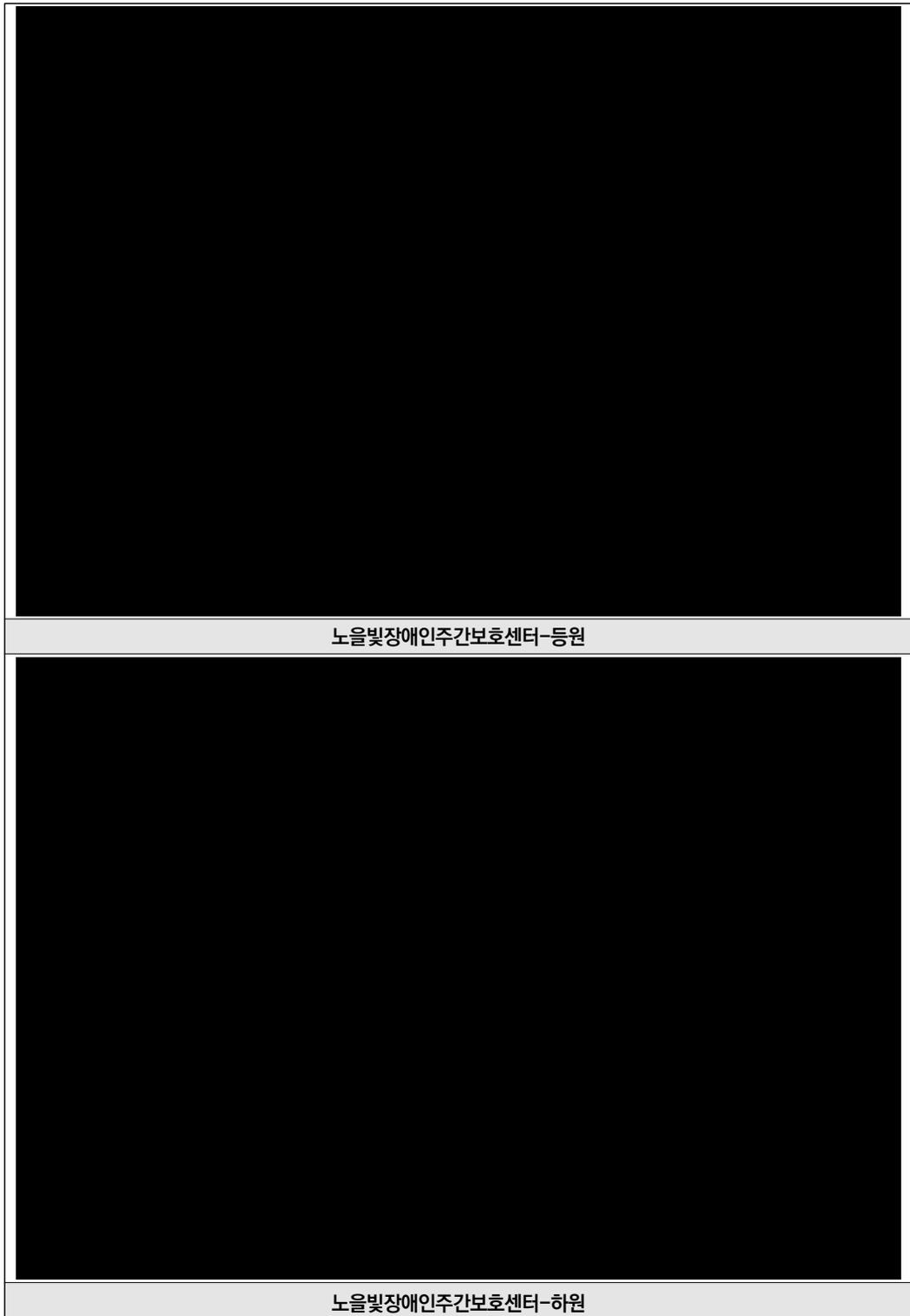
〈그림 3-5〉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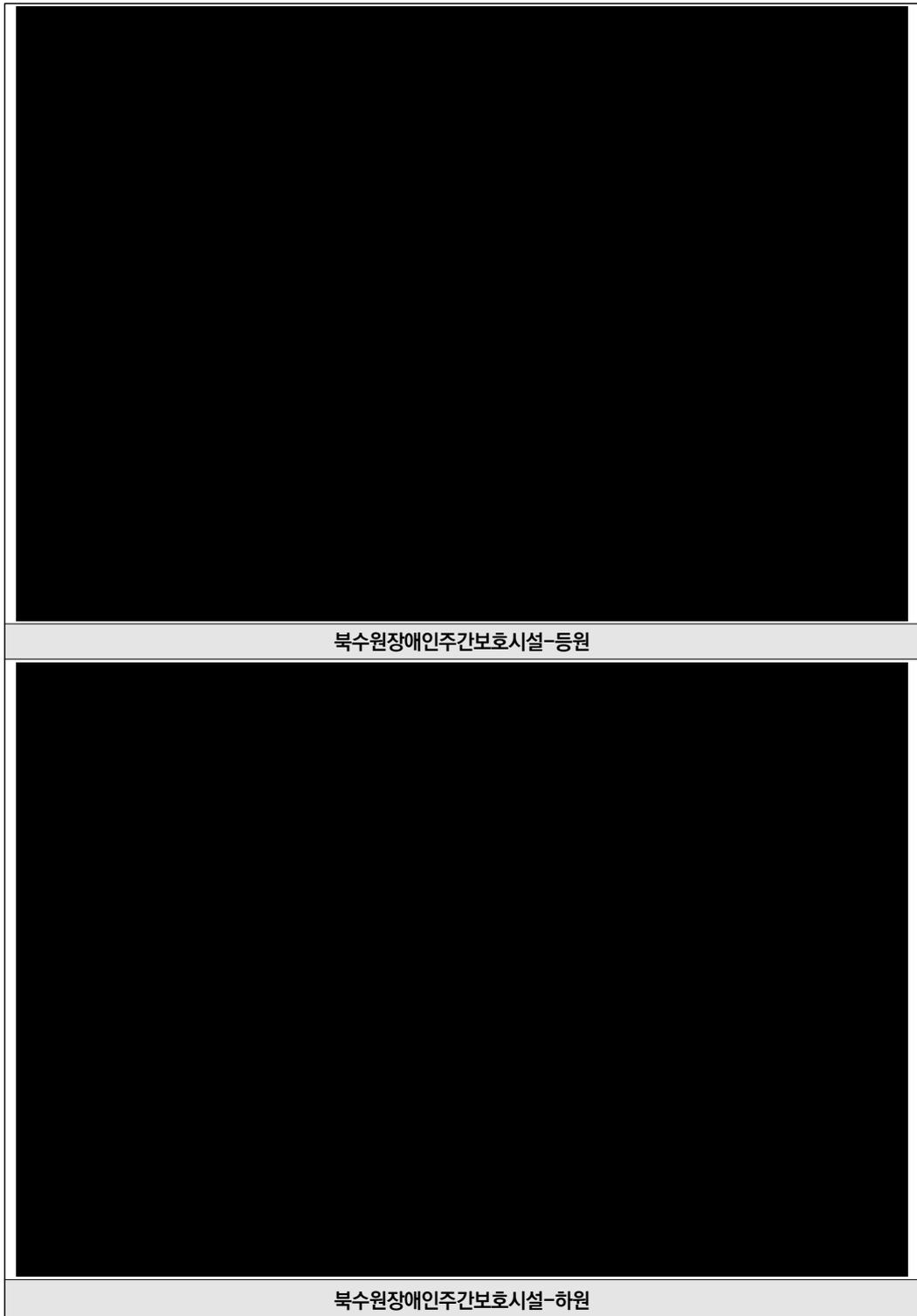
〈그림 3-6〉 꿈자리보금자리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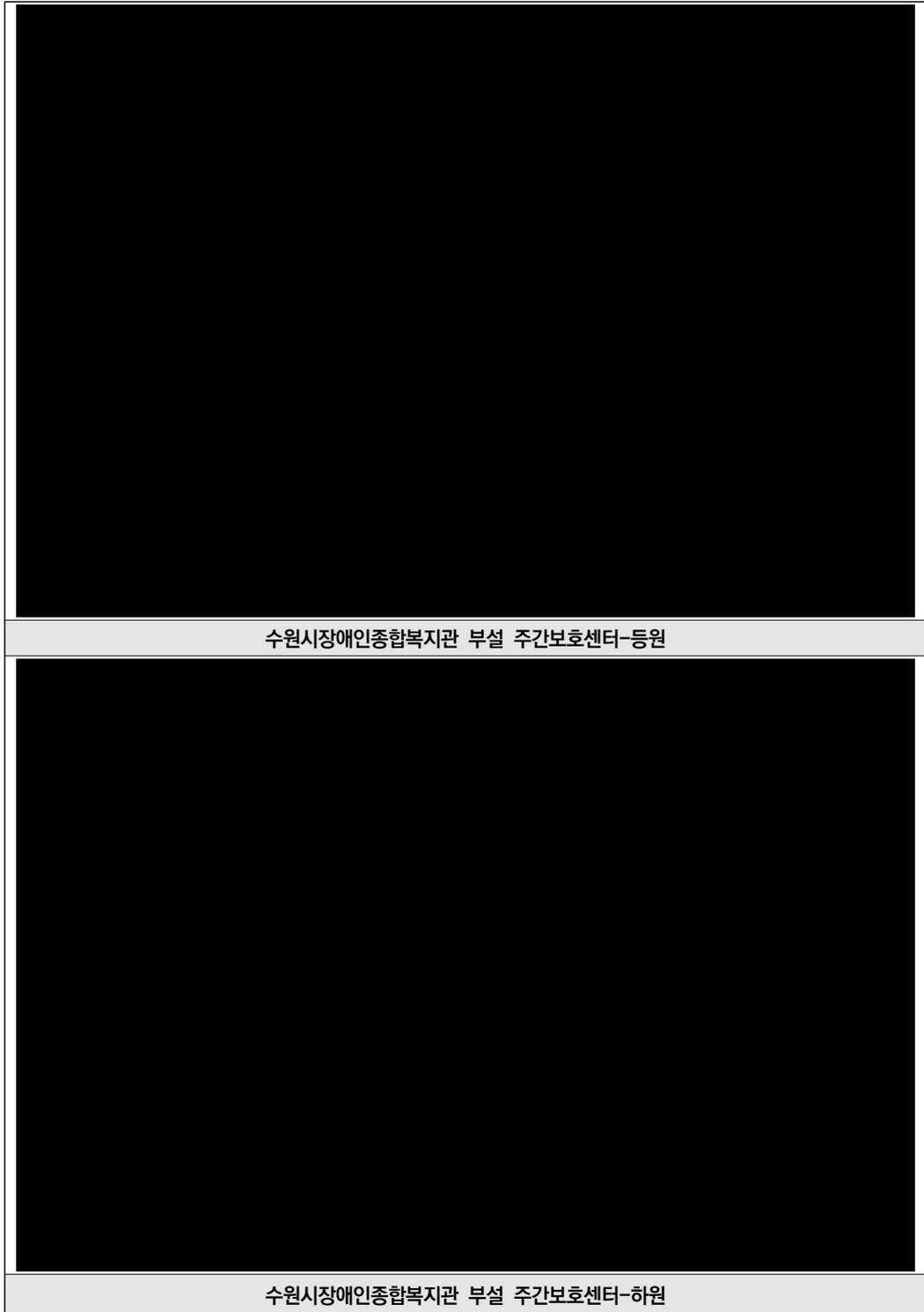
〈그림 3-7〉 노을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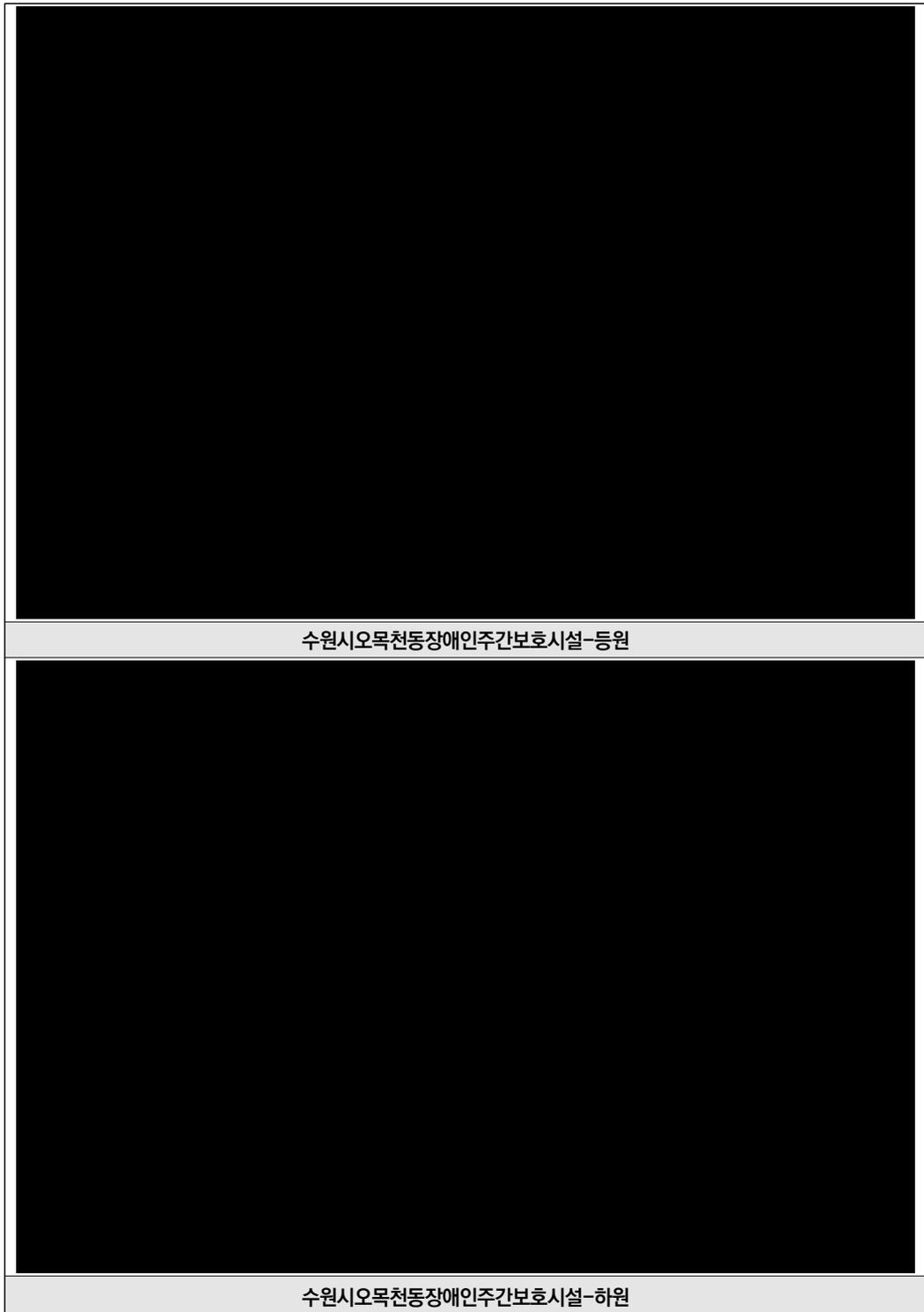
〈그림 3-8〉 복수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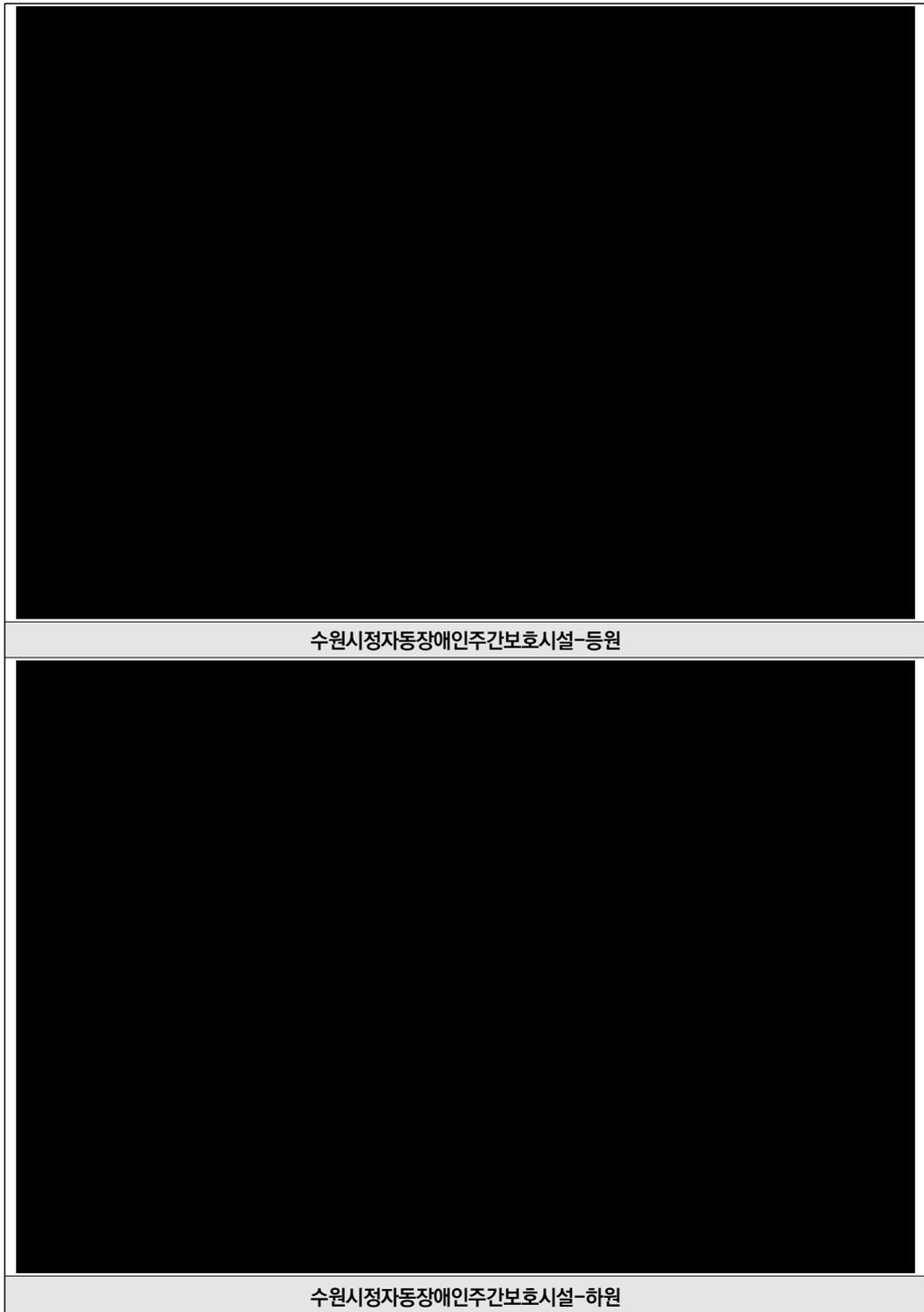
〈그림 3-9〉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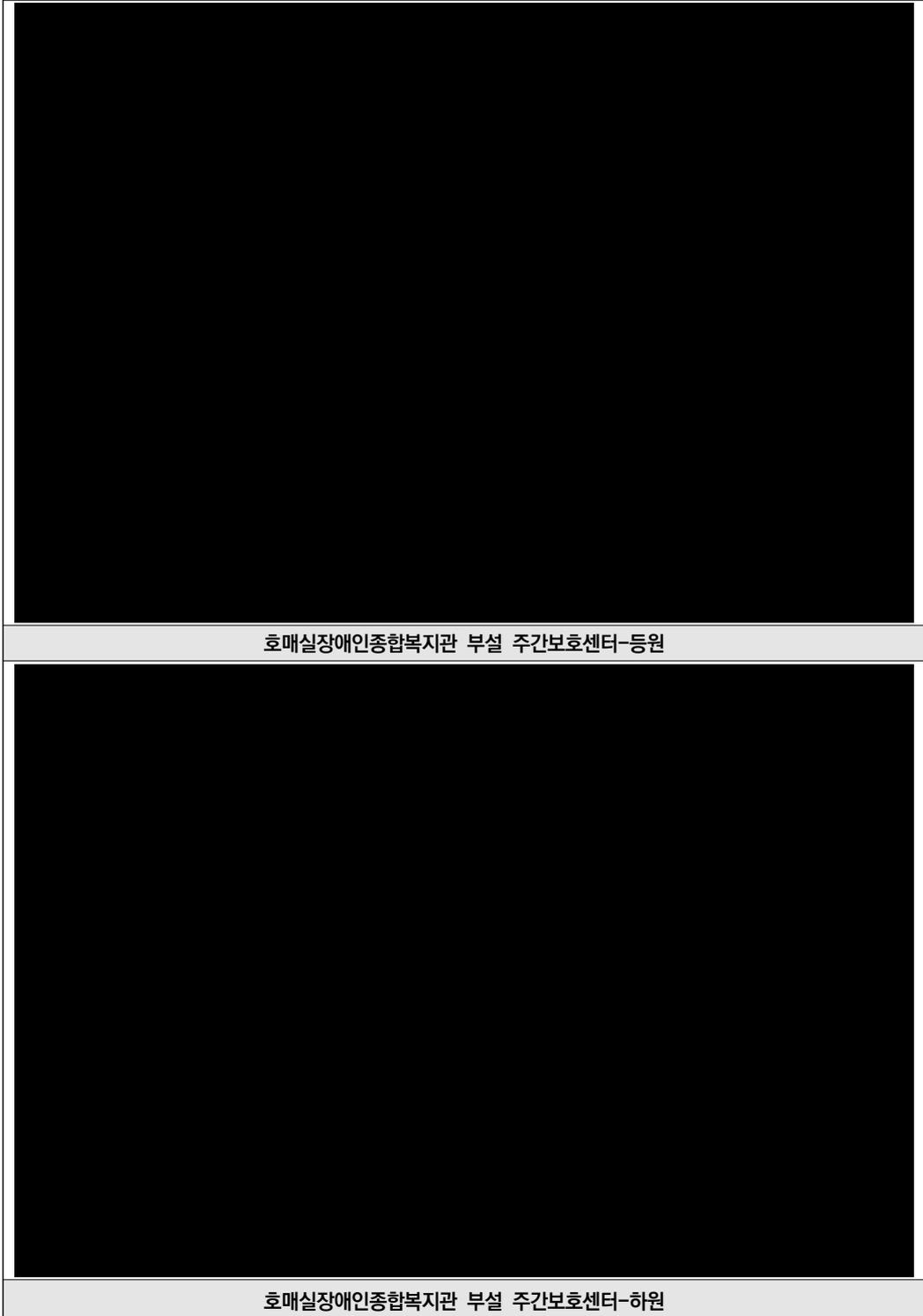
〈그림 3-10〉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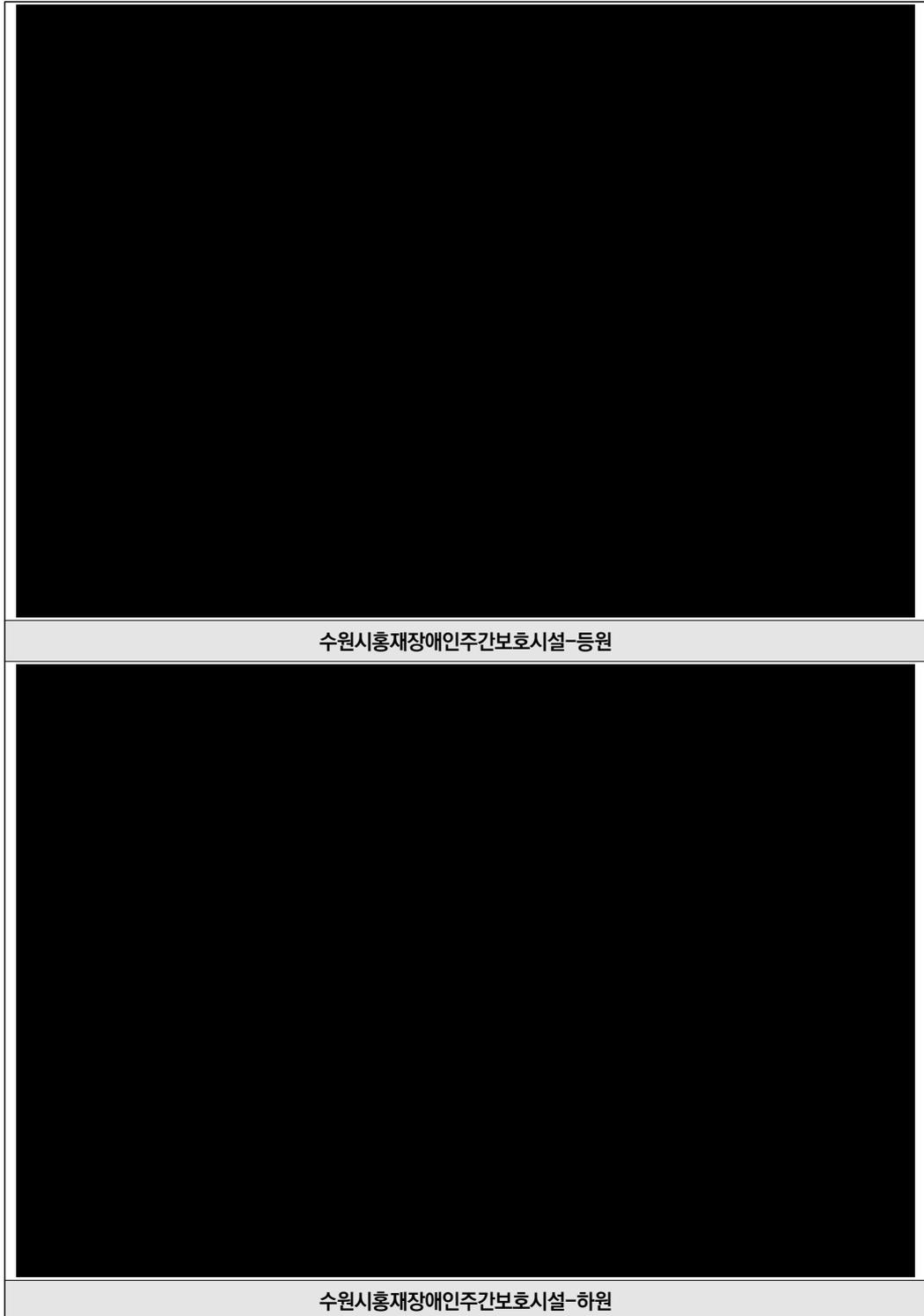
〈그림 3-11〉 수원시정자동장애인가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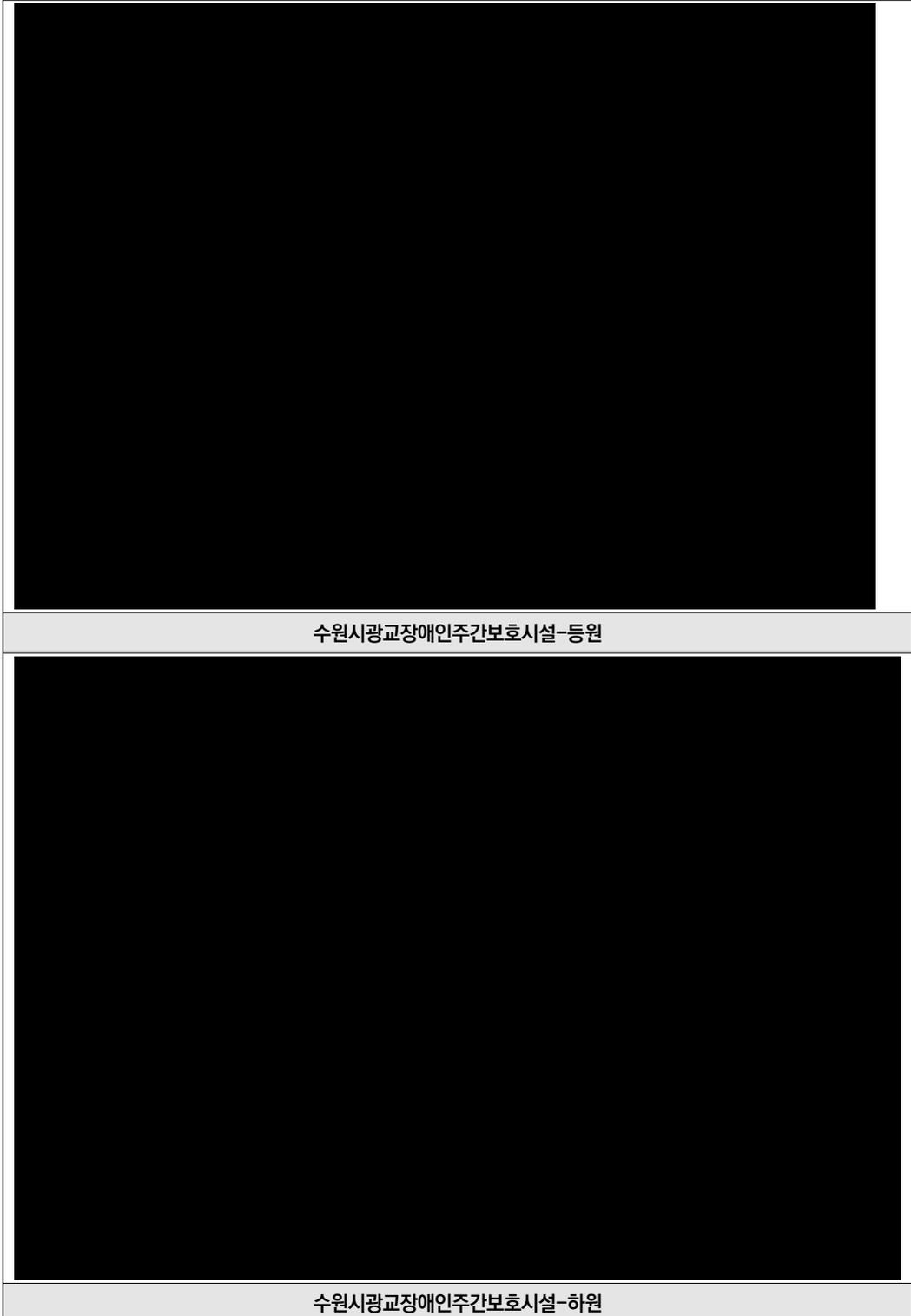
〈그림 3-12〉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등·하원 노선도



〈그림 3-13〉 수원시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그림 3-14〉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하원 노선도



〈표 3-9〉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현황

구분	위탁/신고 시설 여부	서비스이용료			식사이용료		
		일반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급자	차상위
A시설	위탁	170,000원	전액 감면	170,000원	1일 2,000원	1일 2,000원	1일 2,000원
B시설	위탁	120,000원	전액 감면	12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C시설	신고	180,000원	90,000원	180,000원	-	-	-
D시설	위탁	100,000원	전액 감면	50,000원	1일 3,000원	1일 3,000원	1일 3,000원
E시설	신고	180,000원	180,000	180,000	-	-	-
F시설	신고	150,000원	75,000원	150,000원	-	-	-
G시설	위탁	120,000원	전액 감면	12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H시설	위탁	100000	전액 감면	전액 감면	60,000원	60,000원	60,000원
I시설	신고	180,000원	90,000원	126,000원	-	-	-
J시설	위탁	110,000원	전액 감면	11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주 1: F시설의 경우 수급자는 왕복 1만원, 편도 5천원을 별도로 받고 있음(비수급자는 왕복 2만원, 편도 1만원)

2: E시설과 F시설, I시설은 식사와 송영서비스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4) 이용기한

- 시설별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이용기한을 분석한 결과, 11개 시설 중 8개 시설은 이용기한 제한이 있었고 최소 7년에서 최대 16년까지임

〈표 3-10〉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기한 현황

시설명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F시설	G시설	H시설	I시설	J시설	K시설
이용기한 제한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이용기간	8년	7~8년	 	8년	 	 	8년	8년	16년	8년	10년

주 1: A시설은 8년(기본) + 연장가능(30살까지 유예)가능함

2: B시설은 구시설에서 이관되어진 이용인 7년, 신축시설 신규이용인 8년임

3: K시설은 최대 10년 이용 가능함(4년, 4년, 2년)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제2절 퇴소자 및 대기자 현황

1. 퇴소자 현황

-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다가 퇴소한 장애인은 총 201명으로 나타남. 그 중 2개 이상 시설을 이용한 중복장애인 39명을 제외하면 총 162명의 장애인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자 현황(2017.01.01.~2022.06.16.)

(단위: 명)

연번	시설명	퇴소자 인원		
		퇴소 인원	중복 인원	실인원
	계	201	39	162
1	A시설	22	0	22
2	B시설	18	4	14
3	C시설	0	0	0
4	D시설	28	14	14
5	E시설	2	0	2
6	F시설	12	1	11
7	G시설	81	15	66
8	H시설	15	0	15
9	I시설	7	0	7
10	J시설	16	5	11
11	K시설	0	0	0

주: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의 크로스 체크한 자료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및 시설별 취합 자료

- 실인원 퇴소자 162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11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 40명, 뇌병변 8명으로 나타나 퇴소장애인의 95.1%는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남(〈표 3-12〉 참조)
- 평균연령은 27.7세이었고, 평균 이용기간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보다는 뇌병변장애인의 평균 이용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표 3-12〉 참조)
- 이용자들이 퇴소한 이후의 이용하는 시설을 분석한 결과 퇴소자의 절반 이상이 다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즉, 주간보호시설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남(〈표 3-12〉 참조)

〈표 3-1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자의 특성

계		장애유형				
		계	지적	자폐성	뇌병변	
총 인원		162명	114명	40명	8명	
연령	최소	8세	8세	13세	12세	
	최대	51세	51세	38세	31세	
	평균	27.7세	28.5세	26.5세	22.5세	
이용기간	최소	11일	11일	14일	17일	
	최대	9,923일	9,923일	8,138일	5,740일	
	평균	5년 9개월	6년	5년 2개월	7년 2개월	
시설 이용 여부	수원지역	주간보호시설	84명	61명	19명	4명
		거주시설	2명	1명	1명	0명
		단기보호시설	1명	1명	0명	0명
		주간활동서비스	9명	4명	5명	0명
		직업재활시설	7명	7명	0명	0명
		활동지원서비스	12명	5명	6명	1명
		가정보호	2명	1명	0명	1명
	수원 외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2명	1명	1명	0명
		대안학교	1명	0명	1명	0명
		주간보호시설	3명	2명	1명	0명
	수원지역 외 (수원시에서 확인 안됨)		21명	17명	3명	1명
	이사(타 지역 및 해외)		15명	12명	3명	0명
	사망		3명	2명	0명	1명

주: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의 크로스 체크한 자료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및 시설별 취합 자료

- 수원시 소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였던 퇴소자 중 중복인원은 39명이었고 그 중 2개 이상 시설을 이용한 퇴소자의 실인원은 18명이었음. 이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최소 2개, 최대 3개 이상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대부분은 현재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13〉 참조)
- 퇴소자 중 〈표 3-13〉의 연번 12번처럼 3개소의 시설을 각각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처음 이용하였던 주간보호시설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소 2개소의 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짧게 116일인 경우(연번 14번)는 적응을 하지 못해서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3-1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복이용 퇴소자의 특성

연번	이름	장애유형	장애정도	나이	이용실태 (과거 시설 → 현재 시설)	주간보호시설 총 이용기간
1	김OO	지적	심한장애	만 30세	A → B → C	8년 2개월
2	김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26세	A → D → A	7년 9개월
3	김OO	지적	심한장애	사망(만 47세)	E → B	6년 6개월
4	김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27세	A → D → A	7년 2개월
5	박OO	지적	심한장애	만 24세	D → C	183일
6	안OO	지적	심한장애	만 29세	D → A → C → D	9년 3개월
7	엄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26세	A → D → A	8년
8	여OO	지적	심한장애	만 24세	D → A → C	222일
9	여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27세	D → A → C	6년 9개월
10	이OO	지적	심한장애	만 36세	D → A → C → D	9년 4개월
11	이OO	지적	심한장애	만 27세	D → A → C	9년 2개월
12	이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42세	A → B → C	8년 2개월
13	전OO	지적	심한장애	만 29세	D → A → D	9년 3개월
14	조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23세	D → A	116일
15	최OO	지적	심한장애	만 29세	A → B	7년 6개월
16	한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24세	D → C → 주간활동서비스	317일
17	홍OO	자폐성	심한장애	만 32세	D → C	7년 7개월
18	황OO	지적	심한장애	만 34세	D → A → D	9년 6개월

주: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를 크로스 체크한 자료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및 시설별 취합 자료

2. 대기자 현황

- 대기자 모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4개 시설(36.4%)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만 모집하였으나 7개의 시설은 상시적으로 대기자를 모집함

〈표 3-1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모집방법 및 향후 변경방법

(단위: 개소)

현재 대기자 모집 방법			대기자 모집 변경 의향		
계	결원발생시 모집	상시 모집	계	결원발생시 모집	상시 모집
11	4	7	7	4	3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2월 21일 기준³⁾당시의 현원과 정원보다 많은 533명으로 나타남
 - 사람 한명당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까지 대기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됨

〈표 3-1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현황(2022.02.21.)

(단위: 명, 개소)

연번	시설명	정원	현원	대기자		
				계	최소 대기시설	최대 대기시설
계		422	343	533	1	7
1	A시설	32	27	11		
2	B시설	72	68	0		
3	C시설	15	15	7		
4	D시설	32	27	157		
5	E시설	13	10	32		
6	F시설	24	20	31		
7	G시설	72	62	100		
8	H시설	36	34	169		
9	I시설	10	13	26		
10	J시설	100	62	0		
11	K시설	16	5	0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3) 수원시에서 대기자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취합했던 자료의 시기임

- 본 연구에서 533명의 대기자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타 지역의 등록장애인으로 구분한 결과, 51명이 타 지역 등록장애인이었고 시설별 중복대기자 184명이었음. 즉, 대기자 중 수원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중복대기자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대기자는 298명으로 나타남

〈표 3-16〉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실인원

(단위: 명)

대기자	수원 외 장애인	중복대기자	대기자 실인원
533	51	184	298

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자료와 시설별 취합자료를 취합하여 크로스 체크한 내용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및 시설별 취합자료

- 대기자 298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287명(96.3%)이었음
- 현재 수원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287명 중 대다수(159명)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직업재활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수원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대기자는 39명은 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인 경우로 예측됨

〈표 3-17〉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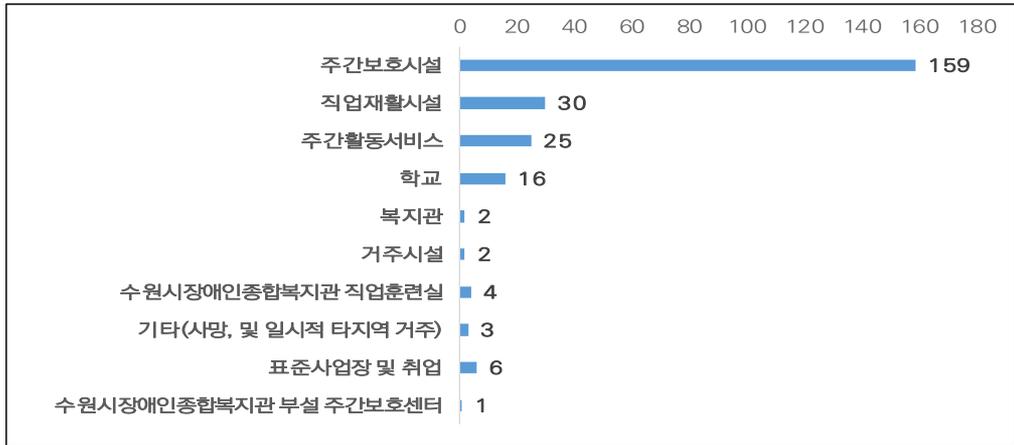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이용 지역		
	계	수원시	수원 외
계	298	287	20
소계	259	248	20
주간보호시설	163	159	4
직업재활시설	31	30	1
주간활동서비스	25	25	0
학교	18	16	2
복지관	2	2	0
거주시설	6	2	4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실	4	4	9
기타(사망 및 일시적 타지역 거주)	3	3	0
표준사업장 및 취업	6	6	0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1	1	0
미이용	39	39	0

자료: 시설에서 대기자에게 확인한 자료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그림 3-16〉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수원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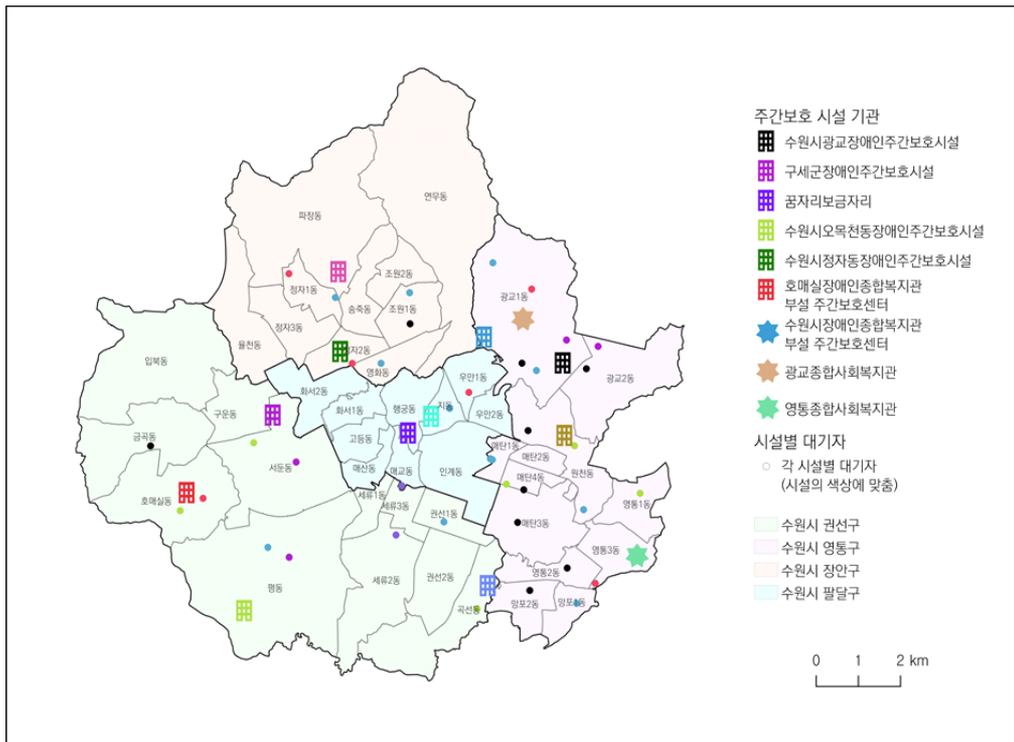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시설에서 대기자에게 확인한 자료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서비스 미이용 대기자 39명은 권선구와 영통구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그림 3-17〉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현황(서비스 미이용자)



제3절 종사자 현황

1. 종사자 배치 기준 및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는 크게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기능직으로 구분됨. 시설당 시설장은 1명이고 사회재활교사는 2022년 개정되어 4:1에서 3:1로 변경되었고, 사무원은 1명, 기능직 1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무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며, 사회재활교사는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22)
- 보건복지부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인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원시에서는 2급의 중간관리자의 인력을 정원 79인 이하, 8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사무원은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중간관리자(2급)가 사무원 업무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50명 이상인 경우만 1명을 배치해주고 있음(〈표 3-18〉 참조)
- 수원지역에서 정원규모가 가장 많은 J시설의 경우 당초에는 정원을 80명 규모로 설정하였으나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100명으로 결정됨.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과장(2급)은 1명으로 계획하였으나 100명이 되면서 중간관리자(2급)이 3명으로 변경됨(〈표 3-18〉 참조)

〈표 3-18〉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력배치 기준표

2020.09.15.	2021.06.23.		
→ 정원 80명 기준 시설장 : 1명 과장 : 1명 사회재활교사 : 20명 사무원 : 1명 운전원 : 2명 영양사 : 1명 조리원 : 1명 위생원 : 1명 시설관리기사 : 2명	중간관리자(2급) ※ 이용인 대 사회재활교사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	정원 79인 이하	1명
	사회재활교사(3급)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80명 이상~99명 이하	2명
		100인 이상	3명
	사무원(4급) ※ 정원 50명 미만 시설은 중간관리자가 사무원 업무를 겸직	이용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보건복지부 지침) 정원 50명 이상 1명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정원이나 현원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격차가 큼(〈표 3-17〉 참조)
 - B시설과 G시설의 경우 72명의 정원임에 현원은 각 68명, 56명으로 나타나 정원이 100명인 J시설과의 정원은 각각 32명에서 44명이 차이나지만 현원은 오히려 B시설보다도 적음

〈표 3-19〉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정원(2022.03.31.)

(단위: 명)

시설명	이용자		종사자		
	정원	현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A시설	32	27	11	11	0
B시설	72	68	24	25	2
C시설	15	15	5	5	0
D시설	32	27	8	7	0
E시설	13	10	3	6	2
F시설	24	20	7	3	0
G시설	72	56	26	26	1
H시설	36	32	10	11	1
I시설	10	10	4	4	0
J시설	100	62	37	36	1
K시설	16	5	2	2	0

주: 2022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및 시설별 취합자료

- 수원시에서 2022년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소의 시설에 총 141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설마다의 지원기준이 상이함(〈표 3-20〉 참조)
 - 사회재활교사는 많게는 25명에서 적게는 3명까지로 규모에 따라 상이함
 - 4개 설치시설은 중간관리자를 지원하지 않는데 반해 위탁시설 중 J시설은 3명으로 가장 많음
 - 70명대의 시설이나 30명의 시설도 차등없이 동일하게 1명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음

- 신고시설에는 운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⁴⁾, 위생원, 시설관리원이 지원되지 않았고, J시설만 운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시설관리원을 모두 지원받음
- 70명대 시설인 2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은 운전원과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을 공통적으로 보조받고 있었음
- 똑같은 위탁시설임에도 30명대의 시설인 3개소의 시설(A시설, D시설, H시설)중 A시설만 1명의 조리원을 지원받고 있음

〈표 3-20〉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보조금 지원 규모(2022년)

(단위 : 명)

시설명	정원	위탁/설치	종사자									
			합계	시설장	중간관리자(2급)	사회재활교사	운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시설관리
합계	406	-	141	8	8	103	8	3	3	4	2	2
A시설	32	위탁	12	1	1	8	1	0	0	1	0	0
B시설	72	위탁	25	1	1	18	2	1	1	1	0	0
C시설	15	설치	5	1	0	4	0	0	0	0	0	0
D시설	32	위탁	10	0	1	9	0	0	0	0	0	0
E시설	13	설치	4	1	0	3	0	0	0	0	0	0
F시설	24	설치	7	1	0	6	0	0	0	0	0	0
G시설	72	위탁	26	1	1	18	2	1	1	1	1	0
H시설	36	위탁	11	0	1	9	1	0	0	0	0	0
I시설	10	설치	4	1	0	3	0	0	0	0	0	0
J시설	100	위탁	37	1	3	25	2	1	1	1	1	2

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시설별로 종사자들의 직급을 분석한 결과, 중간관리자는 과장, 부장, 팀장, 주임(대리) 등으로 다양함(〈표 3-21〉 참조)

4) 11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4개소는 배달식을 이용받아 점심을 배급하고 있었고, 3개소는 부설기관(법인) 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배급받고 있음. 그 외 4개소의 시설은 주간보호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점심을 조리함

〈표 3-2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 현황(2022.03.31.)

(단위: 명)

시설명	보조금		직급 현황(2022.03.31.)							
	지원 인력	중간 관리자 (2급)	계	시설장 (원장)	과장	부장	팀장	주임 (대리)	사회 재활 교사	기타
A시설	11	1	11	1	0	0	1	0	7	2
B시설	24	1	27	1	1	0	0	1	19	5
C시설	5	0	5	1	0	0	2	0	2	0
D시설	8	1	8	0	0	0	1	0	7	0
E시설	4	0	2	1	1	0	0	0	0	0
F시설	7	0	7	1	0	0	1	3	1	1
G시설	26	1	27	1	0	1	3	0	16	6
H시설	10	1	12	0	0	0	1	0	9	2
I시설	4	0	4	1	0	0	1	0	2	0
J시설	37	3	37	1	0	1	3(2)	0	24	8

주 1: 수원시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보조금을 받는 2급 팀장은 괄호에 있는 것처럼 2명임

2: 노란색 표시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종사자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 종사자들의 입사당시 직급과 현재직급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 결과(〈표 3-22〉 참조), 입사당시와 직급이 변경된 종사자는 15명(10.7%)이 유일함. 그 중에서도 2급(중간관리자)로 변경된 종사자는 3명인데 최소 6년에서 최대 18년까지 소요됨

〈표 3-2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현황(2020.03.31.)

(단위: 명)

시설명	입사당시 직급과 현재 직급의 동일 여부			직급 변동사항		주간보호시설 경력
	계	동일	비동일	직급 변동	해당시설에서의 소요 기간	
A시설	11	10	1	사회재활교사 → 팀장	6년 2개월	6년 8개월
B시설	27	25	2	사회재활교사 → 과장	16년 7개월	18년 8개월
				사회재활교사 → 대리	8년 7개월	9년 6개월
C시설	5	3	2	사회재활교사 → 팀장	8년 1개월	11년 4개월
				사회재활교사 → 팀장	8년 1개월	11년 5개월
D시설	8	8	0			
E시설	2	2	0			
F시설	7	3	4	사회재활교사 → 팀장	5년 5개월	0
				사회재활교사 → 주임(대리)	5년 7개월	0
				사회재활교사 → 주임(대리)	3년 3개월	6년
				사회재활교사 → 주임(대리)	4년 2개월	2년 7개월
G시설	27	23	4	팀장 → 부장	3년	8년 8개월
				사회재활교사 → 팀장	4년 1개월	4년 11개월
				사회재활교사 → 팀장	3년 9개월	4년 8개월
				사회재활교사 → 팀장	2년 8개월	6년 10개월
H시설	12	12	0			
I시설	4	3	1	시설장(원장) → 팀장	2.1개월	6년 3개월
J시설	37	36	1	사회재활교사 → 팀장	61	61개월

주: 2022년 3월 말 기준이며, 보조금(2급) 지원 인력이 아닌 경우는 시설 내부에서 불리는 직위를 의미함

자료 : 시설별 취합자료

-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 시설별 자료를 취합하여 종사자의 직원 1인당 교육비 평균을 금액을 비교한 결과, 신고시설보다는 위탁시설이 직원 1인당 평균교육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질적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표 3-2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단위: 원)

시설명	위탁/신고시설	2019년	2020년	2021년
A시설	위탁시설	150,000	100,000	150,000
B시설	위탁시설	247,846	30,435	52,375
C시설	신고시설	99,400	0	20,000
D시설	위탁시설	200,000	200,000	200,000
E시설	신고시설	0	56,000	56,000
F시설	신고시설	43,000	13,000	37,000
G시설	위탁시설	150,000	150,000	150,000
H시설	위탁시설	179,480	5,500	64,700
I시설	신고시설	0	0	0
J시설	위탁시설	0	0	100,000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2. 퇴사 종사자 현황

- 2019년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퇴사한 직원들은 시설장은 3명, 사회재활교사 54명, 사무원 1명, 기능직 10명, 기타직 1명으로 총 69명임(〈표 3-24〉 참조)

〈표 3-2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퇴사자 현황

(단위: 명)

시설명	퇴사자					
	계	시설장	사회재활 교사	사무원	기능직	기타
계	69	3	54	1	10	1
A시설	6	0	6	0	0	0
B시설	15	1	10	0	3	1
C시설	0	0	0	0	0	0
D시설	6	0	6	0	0	0
E시설	3	0	3	0	0	0
F시설	5	1	4	0	0	0
G시설	29	1	21	1	6	0
H시설	4	0	4	0	0	0
I시설	0	0	0	0	0	0
J시설	1	0	0	0	1	0

주: 2019.01.01.~2022.03.31. 근무한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 종사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676일(약 1년 9개월)로 나타남.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타(영양사)를 제외하고는 사회재활교사의 평균 근무일이 581일(약 1년 6개월)로 가장 짧고 시설장이 1,546일(약 4년 2개월)로 가장 길었음

〈표 3-25〉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사자의 근무기간 현황

(단위: 명, 일)

구분	계	시설장	사회재활 교사	사무원	기능직	기타(영양사)	
인원	69	3	54	1	10	1	
근무 기간	최소	2	1,307	2	-	23	-
	최대	3,653	1,856	2,712	-	3,653	-
	평균	676	1,546	581	638	993	47

주 1: 퇴사 종사자가 1명인 경우는 평균에 기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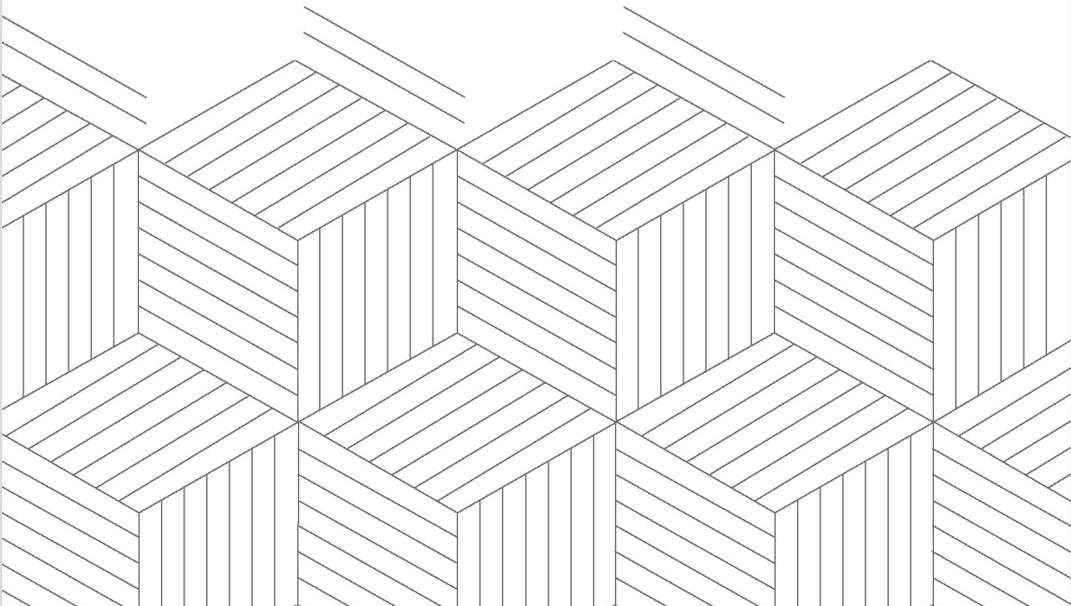
2: 2019.01.01.~2022.03.31. 근무한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시설별 취합자료

제4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제1절 양적조사

제2절 질적조사



제4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실태 및 욕구조사

제1절 양적조사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실태 및 욕구조사

1) 양적조사 개요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고자 양적조사를 실시함
- 양적조사의 설문대상은 현재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이며, 조사는 주간보호시설의 협조5)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여 진행함

〈표 4-1〉 양적조사의 개요(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실태 및 욕구조사)

구분	내용	
조사대상	현재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	
조사기간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7월 15일(12일간)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및 비대면 조사(주간보호시설 협조)	
조사내용	이용자 및 보호자 특성	성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정도, 의사소통 및 신변처리 정도, 도전적 행동 정도, 주돌봄자의 특성
	주간보호시설 이용 실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한 이유, 미래 선택할 주간보호시설의 기준, 주간보호시설을 옮긴 경험 및 이유, 주간보호시설의 만족도, 이용기간 8년 제한에 대한 필요성, 향후 이용의사
	주간보호시설 향후 운영방안	주간보호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 자유의견
응답자 및 회수율	283명(이용자 332명 중85.2% 응답)	

5) 주간보호시설의 협조를 받되 응답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설문지를 봉투에 넣고 설문지가 작성되면 봉투에 동봉된 테이프를 제거하여 밀봉한 뒤 시설로 제출하도록 함

2) 양적조사 결과

- 본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은 총 283명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5.4%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응답자의 대부분은 신변처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은 없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으나 일부는 집착이나 소리 지르기, 자해와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함
- 주돌봄자는 장애인의 모(母)가 87.3%를 차지하고, 연령대는 50대가 51.9%로 가장 많음

〈표 4-2〉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이용 장애인	성별	남성	185	65.4
		여성	98	34.6
		계	283	100.0
	연령대 (만 나이)	30대 이하	264	93.3
		40대 이상	19	6.7
		계	283	100.0
	장애유형	지적	161	56.9
		자폐성	82	29.0
		뇌병변	28	9.9
		정신	7	2.5
		기타	5	1.8
		계	283	100.0
	의사소통 정도	문제없음	22	7.8
		언어적 어려움은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	79	27.9
		보완적 의사소통	37	13.1
		간단한 욕구표현, 단답	81	28.6
		전혀 불가	64	22.6
		계	283	100.0
	신변처리 정도	혼자서 가능	54	19.1
		대부분 혼자서 가능	81	28.6
		대부분 도움필요	93	32.9
완전한 도움필요		55	19.4	
계		283	100.0	
식사가능 정도	혼자서 가능	109	38.5	
	대부분 혼자서 가능	65	23.0	
	대부분 도움필요	71	25.1	
	완전한 도움필요	38	13.4	

구분		사례 수(명)	비율(%)	
	도전적행동	계	283	100.0
		없음	91	32.2
		타해	16	5.7
		자해	34	12.0
		소리지르기	53	18.7
		집착	58	20.5
		기물파손	4	1.4
		기타	27	9.5
주돌봄자	이용자와의 관계	계	283	100.0
		부	29	10.2
		모	247	87.3
		조부모	3	1.1
		형제자매	3	1.1
		기타	1	0.4
		계	283	100.0
	성별	남성	35	12.4
		여성	248	87.6
		계	283	100.0
	연령대	30대 이하	11	3.9
		40대	49	17.3
		50대	147	51.9
		60대 이상	76	26.9
		계	283	100.0

- 응답자들에게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다양한 경험제공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1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통합능력 향상(16.0%), 낮시간 돌봄(15.9%) 등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문항	사례 수(명)	비율(%)
경제활동 참여	133	11.3
양육부담 경감	139	11.8
낮시간 돌봄	188	15.9
사회통합능력 향상	189	16.0
일상생활능력 향상	191	16.2
다양한경험 제공	200	17.0
자립능력 향상	134	11.4
주기타	5	0.4
계	1,179	100.0

주: 다중응답 문항임

- 현재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한 기준과 향후에 선택할 때의 기준을 질문한 결과, 현재는 지리적 접근성이 28.9%로 가장 높았고 향후에도 지리적 접근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음
 - 접근성은 여전히 1순위이지만 그 비율이 감소한데 반해, 쾌적성이나 서비스 내용, 시설적응도의 선택 기준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17.4%에서 5.9%로 감소하여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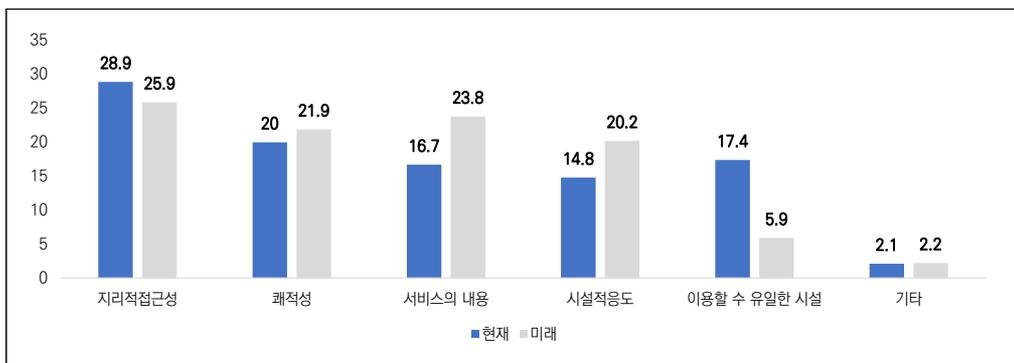
〈표 4-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하는 기준(현재, 미래)

구분	현재		미래	
	사례 수(명)	비율(%)	사례 수(명)	비율(%)
지리적접근성	176	28.9	185	25.9
쾌적성	122	20.0	156	21.9
서비스의 내용	102	16.7	170	23.8
시설적응도	90	14.8	144	20.2
이용할 수 유일한 시설	106	17.4	42	5.9
기타	13	2.1	16	2.2
계	609	100.0	713	100.0

주: 다중응답 문항임

〈그림 4-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하는 기준(현재, 미래)

(단위: %)



주: 다중응답 문항임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다가 옮긴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옮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3.2%로 나타남

〈표 4-5〉 주간보호시설 옮긴 경험 여부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주간보호시설 옮긴 경험	있음	94	33.2
	없음	189	66.8
	계	283	100.0

- 옮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옮기게 된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간의 이용 제한으로 옮기게 된 경우가 47.9%로 나타남. 즉, 자발적 의지보다는 시설에서의 8년이라는 이용기간 제한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음
 - 기타 의견으로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사, 집과 가까운 거리로 옮기고 싶거나, 건강, 시설의 불만족 등의 이유이었음

〈표 4-6〉 주간보호시설을 옮긴 이유

구분	사례 수(명)	비율(%)
도전적 행동과 같은 부적격 행동으로	8	8.5
기관의 이용기한 제한으로	45	47.9
신변자립이 불가능하여	1	1.1
찾은 결석 등 부정기적 이용으로	2	2.1
기타	38	40.4
계	94	100.0

- 시설 내부환경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이 타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남(〈표 4-7〉 참조)
 - 시설 내부환경의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34.3%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은 만족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7〉 주간보호시설 내부 환경 만족도 수준

구분	내부환경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사례 수(명)	비율(%)	사례 수(명)	비율(%)
전혀 불만족	5	1.8	0	0.0
불만족	4	1.4	3	1.1
다소 불만족	13	4.6	14	4.9
보통	29	10.2	34	12.0
다소 만족	54	19.1	70	24.7
만족	81	28.6	86	30.4
매우만족	97	34.3	76	26.9
계	283	100.0	283	100.0

-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시설 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공간면적이 넓거나 넓은 환경,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된 경우 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인원수에 비해 공간이 적거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경우는 만족도가 낮았음
- 프로그램 내용은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는 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보호자에게 피드백이 없거나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4-8〉 주간보호시설 내부 환경·프로그램 만족도 이유

구분	만족하는 이유	불만족하는 이유
내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면적이 적당하고 내부환경이 깨끗함 ◦ 쾌적한 시설과 넓은 공간 ◦ 새로 지은 건물로 넓은 공간 분리와 쾌적한 시설 ◦ 새로 신축하고, 돌봄할 수 있는 공간 확보(특히 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공간 또는 그룹 공간의 부족 ◦ 공간에 비해 인원이 많음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 바닥생활 불편 ◦ 공간면적에 비해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음 ◦ 공간부족, 시간이 갈수록 시설의 노후화 됨 ◦ 성인의 체구와 활동면적에 비해 공간이 다소 좁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제공으로 조금씩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주 진행됨 ◦ 시설에서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함 ◦ 자녀가 매우 좋아하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소통/인지와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교육 ◦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함 ◦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이들의 참여나 반응이 어떤지 피드백이 없어 아쉬움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에게 이용제한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4.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표 4-9〉 이용기한 제한의 필요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필요함	44	15.5
필요하지 않음	239	84.5
계	283	100.0

- 이용기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을뿐만 아니라 타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이유이었음

〈표 4-10〉 이용기한 제한의 필요성 이유

이용기한이 필요한 이유	이용기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에게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아이들에게도 환경의 변화를 위해 이용기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8년 이후 갈 곳이 다면 이용기한 제한이 폐지되길 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아이들은 변화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함. 그래서 다시 적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적응이 되면 8년이라는 이용기한에 제한이 걸리게 됨 ◦ 8년 기한은 대기순번을 위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시설에서 나가야하는 대상자들 또한 대기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임 ◦ 타 기관에 입소한다는 보장이 없어 매우 불안함 ◦ 8년이 지난 후에도 자립능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두면 8년 후 지낼 곳이 없어지게 되어 제한을 두는 것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대소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는 갈 곳이 없음

- 응답자들에게 퇴소 이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인 57.6%가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라고 응답함(〈표 4-11〉 참조)

〈표 4-1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퇴소 이후 계획

구분	사례 수(명)	비율(%)
다른 곳에 대기해 두었다	57	20.1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163	57.6
가정에서 지낼 계획이다	10	3.5
쉬다가 찾아볼 예정이다	17	6.0
해당사항 없음	14	4.9
기타	22	7.8
계	283	100.0

- 8년 이후에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보내고 싶은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6%는 계속적으로 현 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표 4-1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의향(이용기간 제한 이후)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예	262	92.6
아니오	21	7.4
계	283	100.0

- 주간보호시설이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질문한 결과, 낮시간 보호, 일상생활능력 향상, 다양한 경험 제공, 사회통합능력 향상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낮시간 보호	82	29.0
사회통합능력 향상	44	15.5
일상생활능력 향상	72	25.4
다양한 경험 제공	47	16.6
자립능력향상	31	11.0
기타	7	2.5
계	2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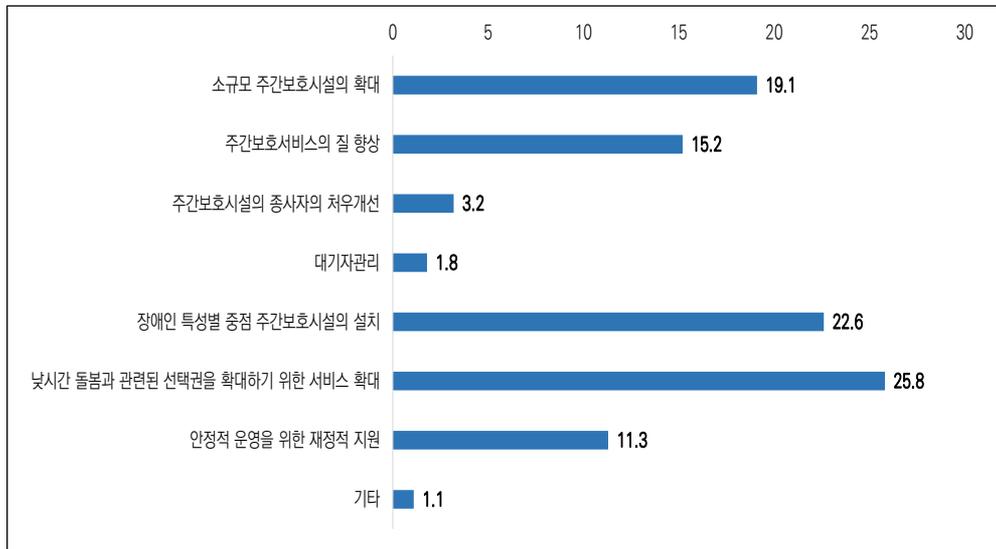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낮시간 돌봄과 관련된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특성별 중점 주간보호 시설의 설치’, ‘소규모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소규모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54	19.1
주간보호서비스의 질 향상	43	15.2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의 처우개선	9	3.2
대기자관리	5	1.8
장애인 특성별 중점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64	22.6
낮시간 돌봄과 관련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	73	25.8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2	11.3
기타	3	1.1
계	283	100.0

〈그림 4-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



-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돌봄자가 제안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뇌병변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고령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됨
 - 집 근처에 소규모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됨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별화 교육 및 1:1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됨

〈표 4-1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정책제안 및 건의

정책제안 및 건의(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30세 이후 소규모 주간보호시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좋겠고, 중증장애(1~2급)도 어느 시설이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 43세 이상 노령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 뇌병변 중증장애인은 정말 갈 곳이 없다. 발달장애 등은 그나마 갈 곳이 있는 반면 뇌병변은 시설장들도 기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화가 나기도 한다. 뇌병변시설은 크게는 수원에 시설 5~6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알기론 센터장들이 뇌병변인들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다. 일단 너무 힘들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과 경험(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진국과 비교까지 못해도 그 비슷한 수준이라도 되면 가족과 부모와 장애인들에 마음이 힘이 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장애인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장애정도가 심하고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갈 곳이 없고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돌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 점이 개선되어 장애가 힘든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의 이용시간도 늘어나길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들은 1대1일 케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주간보호시설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만약 1:1케어가 가능하다면 다른 주간보호시설에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변처리가 불가하여 5군데의 주간보호시설을 옮겨 다녔고, 현재도 오전만 가능하다고 하여 오전에만 다니고 있습니다.
-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을 5시까지 확대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하원준비시간이 3시부터 시작하며 3시 30분이면 차량탑승이 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은 5시 이전으로 그보다도 훨씬 이른 시간에 귀가합니다. 성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귀가시간이다 보니 이용자 부모들은 할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설에는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 이용자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용자 거주지 가까운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게 좋다고 느낌, 돌발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 질 높은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들이 집밖에 나와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함

2. 학령기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향후 이용 욕구조사

1) 양적조사 개요

- 향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잠재적 집단인 학령기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향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적조사를 실시함
 -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현재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장애인과는 욕구가 상이할 수 있음. 이에 현재 이용하는 집단과 향후 이용할 집단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 수원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학령기 장애인 부모에게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함

〈표 4-16〉 양적조사의 개요(학령기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향후 이용 욕구조사)

구분	내용	
조사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인 부모	
조사기간	2022년 7월 4일(월) ~ 7월 22일(금)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수원교육지원청 협조)	
조사내용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설문응답자(보호자) 특성	성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정도, 의사소통 및 신변처리 정도, 도전적 행동 정도, 보호자의 특성
	주간보호시설 인지 및 이용 욕구	주간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향후 보낼 의향, 주간보호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응답자	126명	

2) 양적조사 결과

- 향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6명의 응답자가 응답함
-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2.2%를 차지하고, 연령대는 10대 이상이 65.1%를 차지함. 장애는 심한장애가 대부분이고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음
- 응답자의 주돌봄자는 모(母)가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음. 자세한 내용은 〈표 4-17〉 참조

〈표 4-17〉 학령기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자녀	성별	남성	91	72.2
		여성	35	27.8
		계	126	100.0
	연령대 (만 나이)	10세 미만	44	34.9
		10세 이상	82	65.1
		계	126	100.0
	장애유형	지적	55	43.7
		자폐성	54	42.9
		뇌병변	10	7.9
		언어	3	2.4
		지체	2	1.6
		청각	1	0.8
		안면	1	0.8
		계	126	100.0
	장애정도	심한장애	123	97.6
		심하지 않은 장애	3	2.4
		계	126	100.0
	의사소통 정도	문제없음	15	11.9
		언어적 어려움은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	34	27.0
		보완적 의사소통	11	8.7
		간단한 욕구표현, 단답	41	32.5
		전혀불가	25	19.8
		계	126	100.0
	신변처리 정도	혼자서 가능	25	19.8
		대부분 혼자서 가능	41	32.6
		대부분 도움필요	45	35.7
		완전한 도움필요	15	11.9
계		126	100.0	
식사가능 정도	혼자서 가능	41	32.5	
	대부분 혼자서 가능	44	34.9	
	대부분 도움필요	27	21.4	
	완전한 도움필요	14	11.1	
	계	126	100.0	
도전적행동	없음	45	35.7	
	타해	5	4.0	
	자해	15	11.9	
	소리지르기	26	20.6	
	집착	22	17.5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기물파손	3	2.4
		기타	10	7.9
		계	126	100.0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형태	특수학교	59	46.8
		특수학급	56	44.4
		일반학교 일반학급	6	4.8
		일반학교 특수학급	5	4.0
		계	126	100.0
주돌봄자	이용자와의 관계	부	14	11.1
		모	108	85.7
		조부모	2	1.6
		기타	2	1.6
		계	126	100.0
	성별	남성	14	11.1
		여성	112	88.9
		계	126	100.0
	연령대	30대	24	19.1
		40대	85	67.5
		50대	14	11.1
		60대 이상	2	1.6
		기타(응답없음)	1	0.8
		계	126	100.0

- 설문에 응답한 학령기 장애인의 주돌봄자 126명 중 82.5%(104명)는 주간보호시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91명은 향후에 주간보호시설을 보낼 의향이 있었음

〈표 4-18〉 주간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

구분	문항	빈도(건)	비율(%)
주간보호시설 인지 여부	알고 있음	104	82.5
	모름	22	17.5
	계	126	100.0
주간보호시설 향후 이용 의향	있음	91	72.2
	없음	35	27.8
	계	1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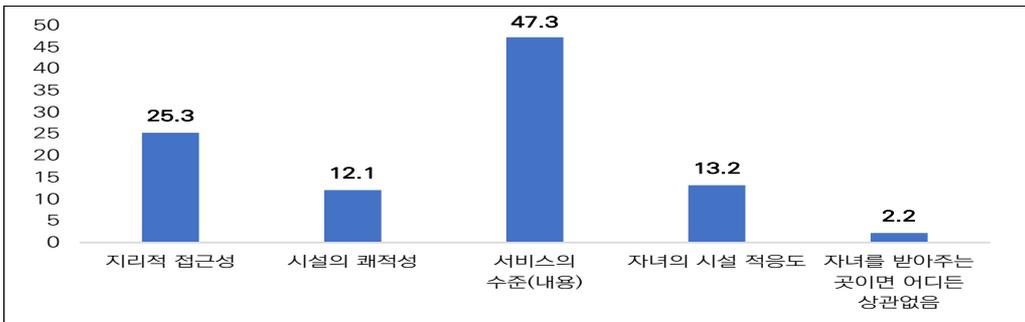
- 주간보호시설을 보낼 의향이 있는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할 때 우선시 할 기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서비스의 수준(내용)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리적 접근성(25.3%), 자녀의 시설 적응도(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에서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향후 선택기준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2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의 내용이 23.8%로 나타났는데 반해 현재 장애아동의 주돌봄자는 1순위가 서비스의 수준(내용)이라 향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됨

<표 4-19> 주간보호시설 선택 시 기준

문항	빈도(건)	비율(%)
지리적 접근성	23	25.3
시설의 쾌적성	11	12.1
서비스의 수준(내용)	43	47.3
자녀의 시설 적응도	12	13.2
자녀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음	2	2.2
계	91	100.0

<그림 4-3> 주간보호시설 선택 시 기준(장애아동 기준)

(단위: %)



- 반대로 주간보호시설을 보내지 않을 돌봄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낮시간 이용 시설을 질문한 결과, ‘일자리 시설’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기관(20.0%)’,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퇴소자들의 현황과 유사하게 학령기 장애인의 주돌봄자도 주로 일자리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0〉 낮시간 이용 희망 시설

문항	빈도(건)	비율(%)
일자리 시설	11	31.4
장애인복지관	3	8.6
평생교육기관	7	2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	17.1
가정보호	6	17.1
기타	2	5.7
계	35	100.0

-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보낼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장애인 자녀의 기능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적으로 열악해서’라는 응답이 22.9%로 높게 나타남
 - 학령기 장애인부모들은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기능이 낮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며, 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문항	빈도(건)	비율(%)
시설적으로 열악해서	8	22.9
장애인 자녀의 기능이 좋아서	10	28.6
장애인 자녀의 능력 등이 떨어질까봐	5	14.3
주간보호시설의 부정적 인식	5	14.3
기타	7	20.0
계	35	100.0

- 학령기 장애인의 주돌봄자들은 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즉,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키우고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들의 기능까지 향상되는 시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수요자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보호에 초점을 맞추되 다양한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표 4-22>는 학령기 장애아동 부모가 제안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정책제안임

<표 4-22> 학령기 장애인의 정책제안 및 건의

정책제안 및 건의(학령기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 ◦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용자 수준별, 다양한 수준별 커리큘럼으로 운영 ◦ 18시까지 돌봄지원 필요 ◦ 도전적 행동 있는 중증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돌봄시설 이용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 전문기관의 전문재활사 등이 기존 시설에 파견되어 행동수정 프로그램으로 이용자 교육 및 교사 양성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 보호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시설을 원함

제2절 질적조사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1) 기관방문 및 인터뷰 개요

-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동일한 기능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지역적 위치 및 이용자의 특성, 위탁 및 설치신고의 여부,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의 실태 및 욕구가 상이함
-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표 4-23>과 같이 11개 주간보호시설을 모두 시설방문하여 관리자와 종사자를 인터뷰 함

<표 4-23>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관방문 현황

인터뷰 일시	시설명	인터뷰 대상
4월 21일(목) 15:00~17:00	수원시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원장), 김○○(부장), 김○○(팀장)
4월 22일(금) 13:00~14:30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시설장), 최○○(과장)
4월 25일(월) 10:30~12:30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시설장), 김○○(부장)
4월 25일(월) 13:30~15:30	수원시호매실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안○○(관장), 이○○(팀장)
4월 26일(화) 10:30~12:30	북수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홍○○(시설장), 이○○(팀장)
4월 27일(수) 10:00~12:00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한○○(관장), 권○○(국장), 채○○(팀장)
4월 27일(수) 14:00~16:00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윤○○(시설장), 박○○(팀장)

인터뷰 일시	시설명	인터뷰 대상
5월 2일(월) 10:00~12:00	꿈자리보금자리	이○○(시설장), 정○○(팀장)
5월 2일(월) 14:00~16:00	브솔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박○○(시설장)
5월 9일(월) 10:00~12:00	노을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사회재활교사)
5월 10일(화) 10:00~12:00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조○○(팀장)

- 종사자와 관리자는 욕구와 정책에 대한 고민이 상이할 수 있어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함(〈표 4-24〉 참조)
 - 시설별 정원규모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2명까지 추천을 받아 인터뷰이를 선정함

〈표 4-24〉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터뷰 현황

구분	인터뷰 일시	개인적 특성		
		이름	성별	근무경력
종사자 인터뷰	7월 14일(목) 17:00~18:30	이○○	남성	5년 2개월
		우○○	남성	4년 3개월
		양○○	여성	7년 3개월
		장○○	여성	2년 10개월
		최○○	남성	3년 11개월
		이○○	남성	12년 9개월
	7월 15일(금) 17:00~18:30	권○○	여성	2년 2개월
		최○○	남성	3년 9개월
		정○○	남성	3년 8개월
		강○○	여성	6개월
		김○○	남성	3개월
		박○○	남성	10년 10개월

- 시설 설치 유형 및 지리적 특성, 공간적 환경 등에 따라 정책요구 사항이 상이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장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설운영의 한계와 발전방안을 모색함

〈표 4-25〉 시설장 간담회 현황

간담회 일시	참석자	주제
7월 22일(금) 10:00~11:30	9명	종사자 처우개선(인력배치 기준, 2급 정원 등)
8월 4일(목) 10:00~11:30	7명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및 특성화 시설(중고령 등), 정원 기준
10월 27일(목) 10:30~11:30	6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2) 인터뷰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방문 및 종사자 인터뷰, 시설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현재 종사자와 이용자의 비율이 1:4로 되어 있으나 2022년 개정된 지침에서는 1:3으로 비율이 축소됨. 그러나 2021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몇 개의 시설의 정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1:3으로 했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리고 기관들에서는 이미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전에는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한데 반해 대기자가 많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면 보호가 필요한 또 다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이였음. 이에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용기한을 8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수원시의 특성을 보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임
 - 현재 11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이 낮고, 기존시설에 계속 다니기 위하여 퇴소하였다가 다시 재이용하는 상황도 발생함
 - 복지서비스가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표준사업장이나 주간활동서비스, 공공일자리, 평생교육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뇌병변 장애인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도 순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시설별로도 입장이 상이하였음
 - 규모가 큰 시설은 자립과 관련된 별도의 반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신고시설은 장애인이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주간보호시설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용기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대의 입장도 존재함
 - 최종증이 많고 의사표현이나 일상생활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음
- 지역에서는 100명 정원의 시설이 건립되었을 때 최종증이나 뇌병변장애인 보호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표현됨

- 대규모 시설의 경우, 다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거나 최중증 장애인 보다 실질적인 기능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2)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1) 종사자 직급의 통일성 부재, 2) 종사자의 승진체계 부재, 3)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의 위협, 4)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부족으로 제시됨
 - 현재 수원시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1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현원이나 정원이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이 차별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2급 중간관리자가 되는 소요 기간이나 인정되는 인력의 기준이 형평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됨
 - 상대적으로 대규모시설은 운전기사나 별도의 회계인력, 조리사 인력이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자부담으로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시설과 대규모 시설과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었음
 -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복지관 등의 경우 승진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승진체계가 없어 당시의 주무관에 판단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 따라서 종사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승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종사자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장애인을 오랫동안 케어를 하다보니 폭력과 인권침해의 노출되어 있음. 이명이나 골절 등이 자주 나타나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이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치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안전수당이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22년 개정된 지침에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더욱 강조되면서 인권교육이 강조된데 반해 종사자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는데 반해 케어인력인 종사자들은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차량운행을 위하여 9시 전에 셔틀버스에 탑승해야 하고, 하루 중 송영서비스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보호자들은 자녀를 6시까지 보호해줘야 한다고 요청하지만 현재 종사자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인하여 현실과 부모들의 욕구사이에는 입장차이가 존재함

- 현재 시간외 수당 시간이 매달 최대 1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운전원 등은 송영서 비스로 인하여 매달 초과시간 기준을 초월하는 현상이 발생함
- 또한 운전원이 없는 경우 사회재활교사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종사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수인력(운전원, 조리원 등)을 우선배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직무의 특성상 9시 전에 셔틀버스를 동승(또는 직접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시 이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 점심시간인 본래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재활교사는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돌봄현장에서의 현실과 노동법 등에서 오는 격차로 인해 노동법을 위배할 수 밖에 현실에 놓여있었음
-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들의 욕구는 다양해지는데 반해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높고 노동법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임. 단순히 종사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더 줄테니 몇시간 더 일하라는 식은 종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소모품 취급하는 형태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음
-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성이나 교육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처음 이용할 때 사용하는 척도도 검증받은 지표가 아닌 타 기관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업무시간도 부족하다 교육을 받기에도 어려운 현실임
 - 최근에는 개인별지원계획이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한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부족하다고 함

(3) 이용자

-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뇌병변장애인이 주를 이룸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아인을 일컫는 발달장애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의 특성상 같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이 상이하고, 도전행동 등을 보이는 최중증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필요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적행동을 보이거나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외상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이라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최종증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종증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 와상의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아직까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중고령 장애인이 많지 않지만 시설마다 이용기한을 폐지하면 이용자의 변동이 적어 시설과 함께 고령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최종증장애인과 중고령장애인은 간혹적인 인력과 더불어 현재 이용자들과 분리되어서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시설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됨
 - 단, 중증장애인과 중고령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대형시설에서 대한 지역적 고민은 필요함
- 주간보호시설에는 자립을 하고 싶은 장애인도 있지만 아직까지 수원시에는 자립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역적 한계도 언급됨

(4) 대기자 파악 및 관리

- 시에서 대부분의 시설에 정원을 확대하였고 최근에 설립된 시설에서도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엔 나왔던 대기자 관리 시스템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종사자들은 기존에는 주로 기관별로 대기자를 받았다가 결원이 생겼을 때 연락을 취하는 형식으로 하였지만 앞서 <표 3-15>와 같이 실제 미이용 대기자는 39명밖에 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만 대기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최근 낮시간 돌봄서비스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21년 제기되었던 대기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주돌봄자 인터뷰6)

1) 인터뷰 개요

- 현재 수원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10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시설의 협조를 받아 시설당 1명씩 추천을 요청 받아 인터뷰를 진행함
 -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일부는 일정조율이 어려운 관계로 개별인터뷰를 진행함

〈표 4-2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주돌봄자 인터뷰 현황

인터뷰일시	인터뷰이 특성						
	참여자 구분	인터뷰 참여자			자녀		
		성별	나이	관계	성별	나이	장애유형
6월 10일(금) 10:00~12:00	A	여성	51세	모	여성	32세	뇌병변
	B	여성	71세	조모	남성	24세	지적
	C	여성	51세	모	여성	24세	뇌병변, 지적
	D	여성	63세	모	남성	38세	지적
	E	여성	57세	모	남성	29세	정신지체
	F	여성	52세	모	남성	26세	자폐
	G	여성	46세	모	남성	23세	지체
6월 10일(금) 13:30~16:00	H	여성	58세	모	남성	31세	지적
	I	여성	55세	모	남성	28세	지적
	K	여성	62세	모	남성	28세	자폐
	L	여성	62세	모	남성	38세	청각, 중복장애
	M	여성	65세	모	여성	38세	지적
	N	여성	49세	모	남성	24세	자폐
	O	여성	65세	모	남성	37세	자폐
6월 15일(수) 10:00~11:30	P	여성	61세	모	남성	22세	자폐
6월 15일(수) 10:00~11:30	Q	여성	61세	모	여	37세	자폐
6월 20일(월) 10:00~12:30	R	여성	53세	모	남	24세	자폐 및 청각

6) 연구자에게 연구참여 및 연구윤리 동의서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함

2) 인터뷰 결과보고

- 현재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과 집의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힘든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거기서 4시에 출발하는데 동선이 길어서 5시 20분쯤 와요. 우리 아들이 제일 늦게 내려요” (참여자 E)

“가까운데 차량을 이용하면 멀어져요. 그래서 근거리 차량 몇미터 이상은 이용하지 말게 해야 해요. 좁은 차 안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참여자 B)

- 현재의 서비스를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반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우리가 아이를 주간보호를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좀 더 발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체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있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네들하고 우리 애들은 달라요.” (참여자 A)

- 현재는 시설마다 정원이 현원보다 많지만 이전에는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여 긴 시간 대기하였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신체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의 경우 이용할 시설이 더 부족한 현실적 한계도 제기됨

“저는 집에서 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신청을 못하고 집근처로 했어요. 매일매일 제가 어떻게 다닐지가 너무 겁이 나서 그냥 가까운 곳에 대기를 해놓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몰랐어요. 3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참여자 C)

“저희 아이는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그 뇌병변 특수학교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거기를 12년 다녔고, 이제 집이 수원 정자동이다 보니까 수원으로 컴백을 했는데 갈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거예요. 수원에서 그나마 뇌병변이 다닐 수 있는데가 부족해요. 스킬이 부족하다면서 다 거부하더라고요.” (참여자 C)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수원시에서 건립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는 시설과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는 설치(신고)시설이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위탁시설보다 설치(신고)시설이 환경 및 인력채용 등에서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는 똑같은 수원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음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직원도 거의 없어요. 진짜 힘들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중략) 지금 애들이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움직이려면 차량이 부족해서 승용차로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시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요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자 K)

“저희 같은 경우도 시설 자체가 좁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번에 000에서 대기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부모가 보는 그 시설이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에 보내는게 나으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빠랑 내린 결론은 보이는 시설이 다는 아닐 수가 있다. 왜냐면 내 아이가 재미있게 다니거든요. 단지 내 몸을 내가 알아서 걸어 다니고 이런 주변 신변만 하는 거지 사람한테 뒤통수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되고 밥이면 다 해줘야 되는 친구인데 되게 재미있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 열악해도 보내는거죠.” (참여자 N)

“대규모 시설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종사자들의 인력 구조가 괜찮은데 직영인 데다가 소규모 그니까 사실 대규모라고 해봐야 지금 00시설, 00시설, 00시설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20명 기준이에요. 근데 그나마 00시설이나 00시설처럼 그래도 주간보호나 복지관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00이나 00처럼 조금 작고 직영인 데들은 차량도 없죠. 종사자 중 조리원이라든 운전원도 없죠.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이 원하는 게 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지만 종사자는 없죠.” (참여자 O)

- 수원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7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3개소나 운영되고 있는데 주 돌봄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시설보다는 지역 곳곳에 소규모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너무 큰 규모보다 지역에 소규모가 좀 많이 생겨서 소수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적인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이기도 해요.” (참여자 K)

- 수원시는 작년 대기자 이슈가 발생한 이후 대다수의 시설들은 8년이라는 이용기한을 설정해놔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8년이 지난 이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기존 이용자들만 또 다른 대기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었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8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8년이니깐 너 그만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강제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좀 불편하거든 솔직한 얘기예요. 또 한 번 생각하면 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그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면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도 또 대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8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차라리 그 대안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면 굳이 8년이라는 건은 본인이 원해서 옮겨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참여자 D)

“지금 8년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8년을 아니까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요.” (참여자 L)

“지금 다니던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갔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게 있잖아요. 나아졌는데 잠깐 잘못했다가 애가 힘들어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죠.” (참여자 P)

- 앞서 종사자는 대기자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반해 주보호자들은 수원시에서 대지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제기됨. 부모들은 현재 어린이집 대기자와 같이 현재 나의 대기 순서가 몇 번이며, 시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선택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남

“시에 장애 등록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마다 아이들 신상명세서가 있으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이 몇 명 있다는 건 파악이 쉬운데 아닌가요?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해당 아이의 부모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어디에 자리가 있으니 배치해주면 시설에서도 편하지 않아요? 그럼 중복도 피할 수 있고 여기저기 걸어놓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I)

“보통 수원에서 지금 8년으로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암울했는데 타 시(市)를 보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대기 몇 번 여기 끝나면 다른 데 대기를 근데 지금 수업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는 있어요.” (참여자 G)

- 부모들은 자녀들이 40대 이후 갈 곳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문제도 언급함

“저희 아이들이 45살 이후에는 저희 아이들 노인 요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애네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참석자 B)

“앞으로는 우리 애들이 40대 이상이 되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해요.” (참석자 O)

-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폭력성과 같은 도전적 행동을 나타내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어려움도 언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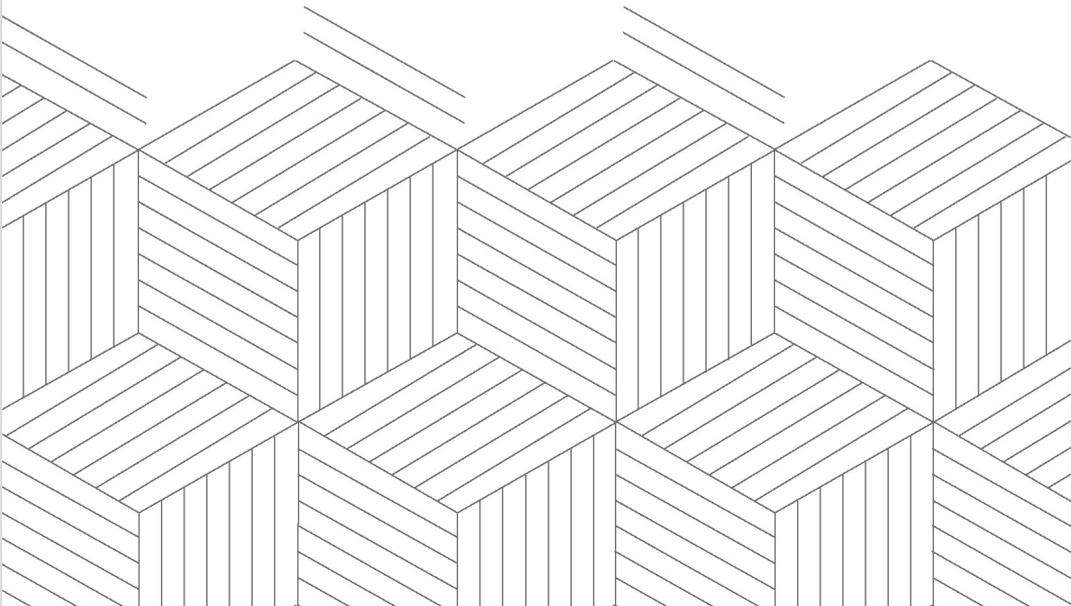
“비위 안 맞으면 죄 뜯고 주저앉고 땅바닥에 눕고 특히 옷에다 대변도 보죠. 어저께도 선생님이 미처 못 알아듣고 가서 내리는 동안에 싸버렸네. 그래서 그전에는 옷도 허다하게 버렸는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했더니 그 옷을 비닐에다 싸서 보냈더라고. 그런 상황이고 자다가 침대에서 오줌 싸는 거는 날은 날마다 하니까 제가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참여자 D)

“우리 아이는 지금 심각한 중증이에요. 왜냐하면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 가족들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참여자 O)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1.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현황

1)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특성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면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임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1개소(2021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 5개소의 시설은 신고(설치)시설이고 6개 시설은 민간위탁시설임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동 시설의 주된 대상은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이 주를 이룸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은 내부지침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과 장애유형을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1개 시설은 이용자의 연령기준을 만 18세 이상부터 만 47세 미만으로 규정함
- 수원시 11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현재 미지원 시설인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 시설의 정원충족률은 80.5%(정원 406명, 현원 327명)임
 - 정원충족률이 100%인 시설은 10개소 중 2개소 밖에 없었고 정원충족률이 가장 낮은 시설은 62.0%로 나타남
 - 1개소의 시설은 수원시로부터 2023년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현원만 유지하고 있어 정원충족률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
- 11개 시설을 이용하는 332명의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을 의미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297명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자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인이 34명의 순임

-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26.2세이었는데 지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평균연령은 각각 27.1세, 29세로 평균보다 높았음
- 이용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1,545일이었는데 뇌병변 장애인이 2,253일로 가장 길게 이용하고 있음
 - 뇌병변 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 퇴소자 현황

-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다가 퇴소한 장애인은 총 201명임. 그 중 2개 이상 시설을 이용하다가 퇴소한 장애인 39명을 제외한 162명의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 장애유형은 지적 144명, 자폐성 40명, 뇌병변 8명으로 나타나 퇴소장애인의 95.1%는 발달장애인임
- 퇴소자의 평균연령은 27.7세였으며, 평균이용기간은 5년 9개월인데 뇌병변 장애인은 7년 2개월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장애유형임
- 퇴소 장애인의 이용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퇴소자의 51.9%는 다시 주간보호시설로 회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장애인은 21명이었음
 - 21명은 수원시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 지역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예측됨

3) 대기자 현황

- 수원시 11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4개 시설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만 대기자를 모집하였으나 7개소의 시설은 상시모집하고 있다가 결원이 발생시 전화연락을 통하여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대기자 533명(2022년 2월 21일 기준) 중 수원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중복대기자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대기자는 298명이었음
- 실 대기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9명(53.4%)은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직업재활시설 31명, 주간활동서비스 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39명은 미이용자로 확인됨
 - 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39명임
 - 대기자 중 최대 7개까지 시설에 대기신청을 한 경우도 존재함

4) 운영적 형평성

- 전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최대 50명까지인 시설도 존재하지만 주로 20명 정원의 소규모 시설임(보건복지부 2022)
- 수원시는 11개소의 시설 중 15명 이하의 정원시설 3개소(27.3%), 16명 이상 ~ 25명 이하 시설 2개소(18.2%), 30명에서 이상 40명 이하 정원 시설 3개소(27.3%), 72명 정원 시설 2개소(18.2%), 100명 정원 시설 1개소(9.1%)로 정원 규모가 다양함
- 수원지역에서는 시설의 정원 규모와 더불어 민간/신고(설치)시설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지역적 이슈가 존재함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들의 송영서비스를 위하여 적게는 1대 많게는 시설별 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
 - 수원시에서는 11개 시설 중 5개 시설만 송영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영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음

5)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지원기준에 대한 적정성과 차별적 지원에 대한 지역적 이슈가 존재함
 - 송영서비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이 없어 사회재활교사가 직접 운전까지 해야 하는 시설들은 업무의 부담감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현재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7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들은 정원이나 현원의 규모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인력배치 기준을 '정원'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있음
 - 현원으로는 종사자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종사자와 중간관리자(2급) 인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종사자 배치 기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2.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실태 및 욕구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현재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11개소 시설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이용자 332명 중 28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3.2%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전 다른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음
 - 옮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주된 이유는 시설의 이용기간 제한이었음
- 응답자들은 넓고 분리된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설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장애인의 수준 및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높게 나타남
- 이용자 중 92.6%는 이용제한 이후에라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향후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으로는 ‘낮시간 보호’와 ‘일상 생활능력 향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낮시간 돌봄과 관련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특성별 중점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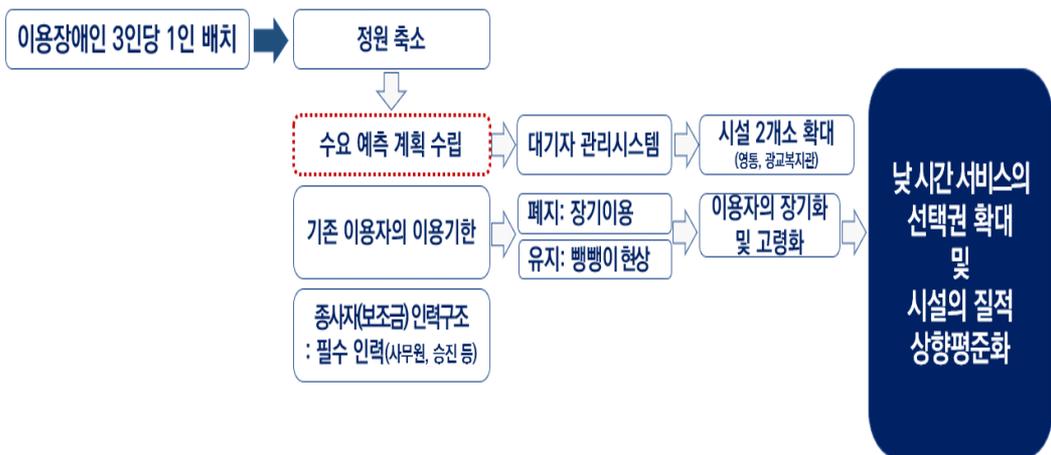
2) 장애아동

- 향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6명 중 주간보호시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82.5%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향후에 주간보호시설을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72.2%로 나타남
- 향후에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할 때 우선시할 기준은 ‘서비스의 수준(내용)’이 47.3%로 높게 나타남. 이는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의 주된 이유는 자녀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시설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2절 정책제언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은 시설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의 질, 이용자의 특성, 대기자의 관리와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음(〈그림 5-1〉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은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설의 설치기준(위탁/신고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질적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임

〈그림 5-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발전방안의 유기적 연계체계 및 방향성



1. 이용자의 정원 기준 마련

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석 결과

- 2021년에는 사회재활교사와 장애인의 비율이 1:4이었으나 2022년 개정된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에서는 1:3으로 조정되어 현재의 정원으로는 동일한 공간에서 사회재활 교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임
 - 수원은 아직까지 1:3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정원은 최초보다 총 73명이 증원되었고, 시설에서 희망하는 정원규모는 대부분 현재의 정원보다 축소된 개소당시의 정원을 희망함
 - 시설에서 개소당시의 정원을 희망하는 이유는 수원지역에서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수원시에서 자의적으로 2016년부터 정원을 조금씩 확대시켰기 때문임

- 양적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시설의 분리된 공간과 면적은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를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시설을 제외하고는 면적이 동일하데 이용자가 확대 되어 1인당 공간면적이 축소됨.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시에서 정원을 확대하여 시설마다 정원충족률이 충족되지 않기도 함
 - 2021년 민간위탁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당초에는 80명 규모였으나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100명 정원으로 개소하였고, 2022년 3월 말 기준 정원충족률은 62%로 미지원 시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수원시에서 시설별로 정원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다르게 1인당 공간면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1인당 공간면적은 1명당 6.6㎡ 이상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최소 연면적(66㎡ 이상)만 제시하고 있어 1인당 공간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었음

2) 정책제언

-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발전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이용자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임
- 현재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재활교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기에는 시설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공간적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어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정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자 정원은 종사자의 인력배치 및 중간관리자 인원을 설정할 때도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정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규정은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원시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이 모여서 기준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설장 간담회에서는 건물 내 사무공간, 화장실, 주방을 제외한 면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제안이 있었음(〈표 4-1〉 참조)

〈표 5-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실면적 공간

(단위 : 명, m²)

시설 구분	정원			면적	
	개소당시	현재	희망정원	연면적	실면적
A시설	30	32	21	697.97	471
B시설	30	72	54	1,439.045	776.715
C시설	15	15	15	215.73	150
D시설	15	32	30	248.98	321.34
E시설	13	13	10	95.4	48
F시설	20	24	20	241.97	134.35
G시설	70	72	60	2,580.99	363.48
H시설	30	36	33	321.61	229.25
I시설	10	10	10	208.456	55.44
J시설	100	100	80	2,384.53	1635.04
K시설	16	16	16	247.82	-

주: 실면적은 연면적에서 사무공간, 주방,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함

자료: 실면적은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연면적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임

2. 이용자의 이용기한 폐지 권고

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석 결과

- 수원시 소재 대부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은 시설 내부지침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 및 장애유형, 이용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근거기준은 찾을 수 없음
 - 먼저 운영되던 시설에서 이용자가 많으니 8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타 시설들이 적용한 것으로 예측됨
- 본 연구에서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돌봄자에게 이용기한의 필요성을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84.5%는 이용기한 제한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92.6%임
- 이용자의 주돌봄자는 자녀의 적응문제와 장애특성 등을 이유로 이용기한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시설과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장애인에게도 이용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극과 순환을 위해서도 한 개의 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다가 퇴소하였던 장애인들을 분석한 결과, 다시 다른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와 같이 정원충족률이 100%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의 이용기한 제한은 의미가 없음

- 주돌봄자의 인터뷰 결과, 기존의 시설을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제한기준을 얼마 안남기고 퇴소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간보호시설로 옮기는 경우도 주를 이룸
- 이용자의 최대 이용기한 제한과 관련된 이슈는 2014년 타 지자체에서도 제기됨. 당시 주간보호시설이 이용자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예측하기 못한 시(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 발표됨

〈표 5-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계약기간 유지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결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에서 이용자의 계약기간(3년)을 설정하여 이용대기자 발생시, 재계약을 불가능하게 한 부분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2014.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이용자 순환을 통해 서비스 형평성과 이용자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에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으며, 지역재활시설은 일종의 이용시설인데 이용시설의 이용조건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공급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OO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OO시는 빠른 시일 내 지역의 장애인 욕구에 맞게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거나, 현재의 주간보호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 시설과 이용자의 입장이 상충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이용기한을 설정한 것이 무의미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어도 최근 낮시간 돌봄과 관련하여 주간 활동서비스나 고용(직업)과 평생교육에서 서비스나 시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외부적 환경변화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시설에서 내부적으로 이용자의 제한기한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경기도는 2022년 11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기회수당(훈련수당 5만원, 교통수당 5만원, 급식수당 6만원)을 지급할 예정임(연합뉴스 2022.11.18.). 이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작업능력이 되는 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임

2) 정책제언

- 시에서는 주간보호시설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설정한 이용자의 이용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함께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단, 이용자의 최대 이용기한을 폐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시설과 함께 고령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뇌병변 장애인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뇌병변 장애인의 주간보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추가될 예정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뇌병변 특화시설과 중고령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개소하는 것이 필요함
 - 2022년 장애인복지과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지원 계획[장애인복지과-9078(2021.6.23.)]'에 따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광고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적으로 2개소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365,010천원의 예산을 편성함
 - 장애인복지시설 중 동일하게 발달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만 직업재활로 옮기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격은 유지를 하되 직업재활시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즉,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처럼 적응기간을 두고 적응을 못하면 다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이용자의 대기자 관리 시스템 마련

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석 결과

- 보호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원시 소재 다수의 시설에 중복적으로 대기를 신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최대 7개 시설에 신청한 대기자도 있었고, 대기자의 62.9%(259명 중 163명)는 현재 다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원시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기자를 모집하는 시설은 4개이고 다른 7개의 시설은 계속적으로 대기자를 받다가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연락을 취하여 이용여부를 묻는 형태로 대기자를 모집하고 있었음

- 상시적으로 대기자를 받는 경우, 대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접수를 받고 다른 시설과의 중복체크가 되지 않다보니 중복대기자가 존재할 수 밖에 구조임
- 시설에서 대기자에게 연락을 하면 당장 이용하기 보다는 현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기를 원하는 현상이 발생함. 즉, 당장 이용이 필요한 대기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 2021년 수원시에서 발생한 주간보호시설 사건 당시에 부모들은 시설정보 안내와 대기자 현황, 현원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요구함
- 수원시에서 제기된 이슈는 다른 지역도 동일한 상황이라 2022년 6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게 '장애인이용시설 대기 앱 개발'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의견을 취합함
 - 1안은 도내 주간보호시설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2안은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대기앱 구축, 3안 전체 지역사회재활이 포함된 앱 구축임
-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게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우선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자 앱을 개발하여 2023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임을 밝힘
 - 대기앱에는 시설안내, 현황, 정보제공, 상담창구, 대기자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임

2) 정책제언

- 경기도에서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별도의 앱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단,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앱에 수원시에서 필요하다고 나왔던 정보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4. 종사자 처우개선

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석 결과

- 전국의 대다수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정원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경우 20명 이하, 30명 정원, 72명, 100명 등 정원규모의 차이가 크다보니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파생되고 있음

- 전국의 대다수 시설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규모가 작아서 승진체계에 대한 이슈가 적지만 수원시는 대규모 시설이 존재하고 이러한 시설들의 종사가 규모가 35명이 넘나보니 승진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음
- 70명 정원 이상의 시설들은 승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100명이상의 시설과 현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10명 이상의 종사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상반된 입장차이는 존재함
- 소규모시설들은 사무원 및 운전원 등이 미지원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악함을 제기하고 있음. 즉,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슈가 상이함
 -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수원지역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임
-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시설들 간의 비형평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 등이 심하며, 지역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의 발전방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폭력이나 소음 등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부족한 상황임
- 현장에서는 2022년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4:1에서 3:1로 사회재활교사의 배치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시설마다 이용자들의 도전적행동이나 장애정도의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 수로 산출하여 종사자를 배치할 경우 종사자들의 이직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인하여 경기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음
-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단순한 돌봄이 아닌 개별적이고 자립적인 돌봄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2) 정책제언

-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자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있음. 이에 수원시에서는 종사자의 배치 및 지원기준에 대한 기준을 시설들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장 간담회에서는 사무원 미지원 시설은 1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능직은 시설 욕구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 안전수당 신설, 복지포인트 신설, 돌봄종사자에 한해 초과근무시간 확대가 제안됨
- 발달장애인은 개인별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 교육이 필요함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거나 3:1 기준에서 장애정도에 대한 수원시만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최종증 및 중장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 개소

1)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특성 및 한계

- 시설공간이 적은 설치신고의 경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이 공간분리가 어려워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은 장애특성이 달라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의 의견이 존재함
 - 수원시설에서 장애인들 간의 타의적 신체접촉과 같은 성(性)적인 이슈도 증가하고 있음
- 최종증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도전적행동을 보이거나 신변처리 등을 혼자 할 수 있는 최종증장애인⁷⁾의 경우 더 이용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이용자들의 평균연령은 20대이긴 하지만 이용자의 이용기한을 폐지할 경우 시설에서 고령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시설에서도 1~2명씩 중고령 장애인이 존재함
- 중장년의 장애인은 건강적인 부문에서 취약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시설이 필요함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애의 특성상 외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 장애인정책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7) 최종증장애이란 표현은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전부터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선 최종증 장애인을 ① 타인에 대한 공격성, 폭력성 등으로 입소거부를 당한 장애인, ②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을 80% 이상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의미함

2) 정책제언

- 최중증과 중장년 장애인의 보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중증장애인과 중장년장애인에 대한 지역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보호서비스를 마련해야 함
 - 수원시는 이미 2개소를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이기에 새롭게 확대될 시설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개소하는 것이 필요함
 -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별도의 간호직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 기존 70인 시설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최중증장애인 보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 이때 종사자 배치기준은 1:1을 권장함
 - 중장년을 위한 인력도 간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함

6.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 확대

1) 수원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분석 결과

- 장애인이 낮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평생교육시설로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이나 타 기능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

2) 정책제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장애인 낮시간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나 정책을 우선순위를 통하여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수원시에서는 지역사회 내 이슈를 계속적으로 함께 해결해나가는 구조를 마련하여 수원시의 제한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권경만(2009).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선진·김형수·전학선(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금남(2020). 사회복지사의 직업정체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선제적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선(2021). 시설장이 인식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명(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시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명연(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 정책. 공법연구, 44(3), pp.61-101.
- 김미옥, 정민아(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pp.51-79.
- 김민희(2019).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윤덕찬(2009).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역량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2호, pp.285-312.
- 백은령(2009). “주간보호시설 토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 세미나 자료집』, pp.75-77.
- 서원선, 최복천, 이상준(2021). 성인발달장애인 낮시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해정, 장기성, 송기호(20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여금숙(2002).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이섭(201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태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6호, pp.121-146.
- 유정원, 이미영(2021).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체계 구축. 경기복지재단.
- 이병화, 이미영, 김민영, 서해정, 양희택, 최유일(2020).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 이복실(2015).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p.5-27.

- 이연진(2021). 경기도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장애학, 6(1), pp.53-79.
- 이진승(2014). 중년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5호, pp.137-159.
- 이향미(2017).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2020). 커뮤니티케어 기반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문합기술의 융합, 6(2), pp.131-137.
- 한연주, 이영안, 방대혁(2016).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현외성, 윤은경(2002). 노인케어복지의 국제적 동향-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16권, pp.65-84.
- P. Janicki, M., Dalton, A. J., Michael Henderson, C., and Davidson, P. W. (1999).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olde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health services consideration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1(5-6), pp.284-294.

〈법률〉

-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웹사이트〉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nise.go.kr/jsp/field/2015-1/03_4.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3.jsp?sub1=4&sub2=8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03.12.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 연합뉴스. 2022.11.18. 경기도, 직업 훈련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 '기회수당' 지급
- 인천일보. 2021.09.07. 경기 발달장애인 11만명, 보호센터 정원은 3000명

〈기타〉

수원시 소재 11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별 취합자료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_____ (2022b).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_____ (2022c). 2021 보육통계

_____ (2022d).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_____ (2022e)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2021.12월 말 기준)

| 부 록 |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실태 및 욕구조사 [보호자용]

ID				
----	--	--	--	--

안녕하십니까?

(재)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장애인을 낮시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원지역 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을 통해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내용은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구)농업과학도서관
- ▶ 문의 :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위원 (☎ 031-220-8021)
수원시정연구원 정보라 연구원 (☎ 031-220-8028)

수원시 학령기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재)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장애인을 낮시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의뢰를 받아 2022년 2월부터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령기(8세~19세) 장애인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을 통해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내용은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구)농업과학도서관
- ▶ 문의 :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위원 (☎ 031-220-8021)
수원시정연구원 정보라 연구원 (☎ 031-220-8028)

B4. 끝으로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정책을 위하여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설문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기프트콘)을 제공합니다. 기념품을 희망하시는 분은 하단에 핸드폰번호를 작성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010-
--------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자 약력 |

한연주

사회복지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2018,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지역기반형 돌봄정책 사례분석 연구: 노인케어를 중심으로」(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연구」(2020, 수원시의회)

「제2차 수원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수립 연구」(2021, 수원시)

「수원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지표 개발(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2021, 수원시정연구원)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2021,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2022,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보라

사회복지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bora1102026@suwon.re.kr

